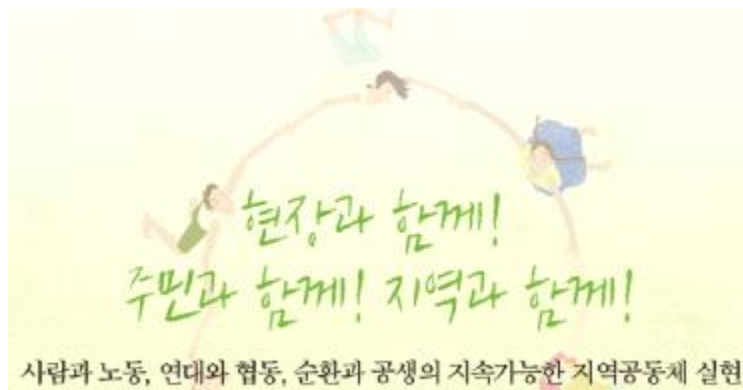


2015년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제 4 차 정 기 총 회

일 시 : 2015. 02. 27(금) 오후 5시

장 소 : 순천향대 인문사회과학대학 6129호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

= 자료집 목차 =

<input type="checkbox"/> 식 순	5
<input type="checkbox"/> 총 회 사	7
<input type="checkbox"/> 경과보고	8
<input type="checkbox"/> 성원보고 (총회원 명부)	9
<input type="checkbox"/> 전차회의록 보고	11
<input type="checkbox"/> 2014년 감사보고	15
<input type="checkbox"/> 2014년 사업 및 결산보고	17
1. 2014년 사업보고	18
2. 2014년 결산보고	35
※ 참조 올해의 모범회원상, 공로패 수상자 명단	39
<input type="checkbox"/> 제2기 임원 선출(안)	41
※ 참조 사회혁신위원회 운영규정(안)	45
<input type="checkbox"/>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47
1. 2015년 사업계획안	48
2. 2015년 예산안	53
3. 아산지역자활센터,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56
※ 참조 민선6기 사회적경제 전략보고서 (도지사 보고자료)	61
<input type="checkbox"/> 정관 및 각종 운영규정	89
1. 정관	
2. 회원내규(안)	
3. 임원내규	
4. 취업규칙	
5. 회원투표 및 임원선출 내규	
6. 성희롱 방지 내규	
<input type="checkbox"/> 2014년 활동일지	116
<input type="checkbox"/> CMS회원가입 신청서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제4차 정기총회

= 식 순 =

구분	시간	내용
등 록	16:50~17:00	등록 및 접수
<제1부> 개 회 식	17:00~17:20	회원영상
		이사장 인사
		올해의 모범회원상 시상
		공로패 증정
		2014년 사경 저금통, ‘티끌기금’ 전달
		광고
<제2부> 정기총회	17:20~18:00	성원보고
		개회
		의사록 서기 및 기명날인인 선임
		의사일정(회순) 확정
		전차회의록 보고
		2014년 감사보고
		안건심의 1. 2014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2. 제2기 임원 선출
		3.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기타안건
		회의록 채택
		폐회
기념촬영		
저녁식사	18:00~19:00	친교의 시간 - 함께 나누고 싶은 ‘책 한권’ 나눔

총 회 사

연대와 협력, 상생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3년을 준비합시다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설립된지 만 3년이 훌쩍 넘어 제4차 정기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괄목할만한 양적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우리 법인의 회원들의 지지와 관심,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인은 태생적으로 연대와 협력, 상생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실천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연대와 협력, 상생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획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야기한다면 지나친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연대와 협력이 아니라 사기꾼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기를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 복지운동단체에서 사회복지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복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설문 결과 민관협치, 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가 1순위로 선정되었고, 사회복지기관·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2순위, 행정기관의 개방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3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관협력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재론할 여지가 없이 중요한 요인이겠으나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버금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은 시민사회 스스로의 성찰에 의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쪽의 역량, 즉 시민사회의 창의성과 전문성, 헌신성 등 민간의 장점을 살려서 공공의 영역에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특별히 시장의 영역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해야만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간절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가 형식적 연대와 협력에 그쳤다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새로운 3년은 연대와 협력, 상생의 가치가 실천적으로 구현되는 시기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그 실천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윤기

경과보고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보고사항 다음과 같이 2014년 이사회 개최 및 2015년 총준회 추진 경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 이사회 및 총준위 경과보고

14.03.27.	제3차 2014정기총회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9127호)
14.04.15.	제2차 실행이사회 (천안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 상근활동가 포상제 도입, 운영비 차입 등
14.05.20.	제3차 실행이사회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9127호) - 민선 6기 사회적경제 전략보고서 검토 및 자유토론
14.06.26.	제4차 실행이사회 (천안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 운영비 차입, 충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수임여부 등
14.07.18. ~ 07.19.	제5차 실행이사회 및 으라차차 임원 워크숍 (지리산) - 충남형 사회혁신형 사경 중간지원조직에로의 확대 및 통합재편에 따른 전망과 과제
14.08.11.	제6차 실행이사회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9127호) - 아산지역자활센터 수탁, 충남참여자치연대 가입 및 청양 강정리 공대위 참여방안
14.09.16.	제7차 실행이사회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9127호) - 민선6기 사회적경제 핵심정책 도지사 건의사항 검토, 사무처 조직재편 계획 등
14.10.06.	임원-실무자 공동 워크숍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9127호) - 민선6기 사회적경제 전략 설명회, 충남형 중간지원조직 확대재편에 따른 협력방안
14.10.29.	제8차 실행이사회 (천안 나사렛대 오은수기념관 344호) - 사무처 직제개편, 육성사업 공간문제, 사회적경제인 시상, 천안시 전담팀 폐지 대응
14.12.09.	제9차 실행이사회 (천안 카페 브살렐) - 상근실무자 추가선임, 제4차 정기총회 및 임원인선, 총준위 구성(이사회로 대체) 등
15.01.20.	2015년 제1차 실행이사회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9127호) - 정기총회 및 소액기금 마련 1일주점 계획, 이사회 구조 확장, 지점(부여센터) 설치 등
15.02.06.	2015년 제2차 실행이사회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9127호) - 정기총회(일시장소, 총회원, 프로그램, 모범회원상, 임원인선안, 총준위 구성 등) 심의
15.02.11.	제1차 총회준비위원회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9130호) - 프로그램 제반사항, 관련 정관 및 각종내규 검토(회원내규 등 제정 이사회 제안)
15.02.24.	제2차 총회준비위원회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9130호) - 정관 시행에 필요한 관련 내규 초안 및 총회 자료집(2014보고, 2015계획) 최종 검토
15.02.25.	2014년도 사업 및 회계 감사 실시
15.02.27.	제4차 2015정기총회 (아산 순천향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형지 최병오 강당)

성원보고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 김민숙 총괄팀장

보고사항 재적회원 총 118 명 중 출석 명, 위임 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2015년 총회원 명부

(1) 개인회원 (109명)					
1	강경림	경기, (주)크루선택	35	박미란	천안,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	강윤정	천안, 천안ngo센터장	36	박상우	홍성,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3	고현국	천안, (주)윈드케어시스템	37	박양순*	서천, (주)에텐영농 대표
4	고현주	보령,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38	박영식	보령,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5	고혜민	천안	39	박용원	아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6	김기배*	천안, 노무사	40	박정기	보령, 노무법인강산
7	김동수*	논산, (주)깨끗한사람들 대표	41	박정현	천안,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8	김동준	경기, 성공회대	42	박종우	아산, 농민재단 사무국장
9	김민숙	세종,	43	박진도	서울, 지역재단 이사장
10	김민조	예산, 前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44	박진용*	아산, 아산YMCA 사무총장
11	김민호	천안, 노무법인참터충청지사	45	박춘섭	세종, 충남발전연구원
12	김병빈*	당진, 前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46	박형선	홍성, 한국학원 원장
13	김석훈	천안, 정담회계법인	47	박혜경	대전,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14	김소라	서울, 동그라미재단	48	방명조	태안,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15	김연수	서울, 前교사	49	서명희	아산, 前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16	김영관	당진, 충청남도청	50	손석현	홍성, 충남자원봉사센터 팀장
17	김영도*	세종, 前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51	손숙영	아산, 前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18	김오열	홍성, 충남광역급식센터	52	송두범	세종, 충남발전연구원
19	김위철	홍성, 뽕뽕 홍성점	53	신재학	아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	김정섭	경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4	안수영	대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1	김제선	대전, 풀뿌리사람들	55	안승화*	보령, 前충남자원봉사센터장
22	김종수	세종, 충남발전연구원	56	엄청나	예산, 전농 충남도연맹
23	김지훈	아산, 충남시민재단 실행위원장	57	오광근	아산, 순천향대학교
24	김태우	천안, 회계사	58	우종한	아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5	김태웅	천안, 좋은도시연구소	59	우희창	홍성, 前충남도미디어센터장
26	김현아	천안, (주)마인드유 대표	60	유연호	아산, 순천향대학교
27	노공우	인천, 김포현대	61	유재준	홍성, 홍성YMCA
28	노병갑	아산, 충남광역자활센터장	62	유지연	천안, 前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9	문덕암*	서산, (주)이든밥상 대표	63	윤 선	아산, 윤선마케팅연구소
30	문정선	아산, 열린문디자인	64	윤성웅*	세종, 세종지역자활센터장
31	문창기	대전,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65	윤인수	천안
32	민대기	예산, 前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66	이경란	서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장
33	박기남	아산, 푸른아산21	67	이동근	홍성, 마을활력소
34	박기연	부여, 맑고푸른공동체협동조합장	68	이상선*	청양,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69	이상순	천안, 천안ngo센터	99	최승호	인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70	이수연	경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0	최영준	천안, 나눔커뮤니케이션
71	이시현	천안, 이시현 세무사	101	최완규	천안, 최완규세무사
72	이원돈	서산, (주)대한항만관리법인	102	최재권	아산, 나사렛대학교
73	이원하	공주, 우리놀이협동조합	103	최준규*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74	이용재*	천안, 호서대학교	104	하승우*	충북,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75	이윤기	천안, 쌍용종합사회복지관장	105	하재찬	충북,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처장
76	이재국*	서천, 前얼굴있는먹거리 사무국장	106	한재숙	부여, 맑고푸른공동체협동조합장
77	이정아	천안	107	허철희	세종, 체리즈
78	이제빈	천안, 前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108	홍은일	세종, 충남발전연구원
79	이종현	천안,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109	황은하	천안,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80	이지아*	천안, 변호사			
81	이혁수	아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82	임상연*	경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83	임종민	아산, 아산시청			
84	임화진	대전, 카이스트 미래전대학원			
85	장기수	천안, 충남청소년진흥원장			
86	장동순	천안, 우리동네협동조합			
87	장인선	아산, 충남시민재단 사무국장			
88	장효안	천안, 충남발전연구원			
89	전성환	아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90	전충훈*	대구, 지역활성화LAP 마르텔로 랩장			
91	정진오	천안, 정진오세무사			
92	정태하	논산, 탐정호휴양마을coop 이사장			
93	조갑순	천안, HUP지원센터			
94	조성희*	공주, 충남교육연구소			
95	조현경	서울, 한겨레경제연구소			
96	차은주	세종, 체리즈			
97	채종헌	경기, 한국행정연구원			
98	최선희	천안, 별달빵집			

(2) 단체회원 (9곳)

1	(안중성)	보령, (주)갈끼미하우스			
2	(이동훈)	천안, (주)리움			
3	(오창석)	천안, (주)명풍			
4	(김호숙)	서산, (주)새림종합환경			
5	(김진선)	천안, (주)장산곶			
6	(박찬무)	천안, (주)즐거운밥상			
7	(심진수)	천안, (주)휴비즈코리아			
8	(한준혜)	아산, 소금꽃협동조합			
9	(정태하)	논산, 탐정호휴양마을협동조합			

전 차 회 의 록 보 고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보고사항 다음과 같이 제3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보고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제3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2013년 3월 27일(목) 16:00 ~ 17:20
장 소	아산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9127호
참 석 자	40명 (출석 27명, 위임 13명)
심의안건	제1호 의안. 2013년 감사보고 승인 제2호 의안. 2013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안 심의 제4호 의안.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부의
회 순	회의내용
성원 보고	- (이정림) 총회원 63명 중 출석 27명, 위임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개회선언	- (이윤기)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의사록 서기 및 기명날인선임	- 의장이 방명조 회원을 서기로, 김종수 회원과 박기남 회원을 기명날인인으로 지명하고 가부를 묻자, 다른 의견이 없어 총회원 만장일치로 선임하다.
의사일정 확 정	- 의장이 제출된 의사일정 중 ‘2013년 감사보고’ 를 ‘2013년 사업 및 결산안 보고’ 이 전에 처리하는 것이 수순임을 설명하고, 수정 제안안에 대한 가부를 묻자 다른 의견이 없어 총회원 만장일치(박수)로 수정된 의사일정을 채택하다.
전차회의록 보 고	- 의장이 서기와 기명날인인이 서명한 전차회의록에 대해 서면 보고로 갈음할 것을 제안하고, 가부를 묻자 다른 의견이 없어 총회원 만장일치(박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호 의안	- 의장이 ‘제1호 의안(2013년 감사보고 승인)’ 을 상정하고, 참석치 못한 감사를 대신하여 박상우 사무처장이 감사보고서를 대독하다. - 의장이 가부를 묻자 다른 의견이 없어 총회원 만장일치(박수)로 감사보고서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의장이 ‘제2호 의안(2013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을 상정하고, 박상우 사무처장이 제출된 자료집에 근거하여 보고하다. - 의장이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부를 묻자 다른 의견이 없어 총회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3호 의안	- 의장이 ‘제3호 의안(정관 개정안 심의)’ 을 상정하고, 박상우 사무처장이 제출된 자료

집에 근거하여 제안 설명하다.

- 의장이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각 조항별로 가부를 묻자, 다른 의견이 없어 총회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3조(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33번지 3층에 두며	제3조(사무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번지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9130호에 두며	사무실 이전 및 도로명 주소 변경
제4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의 안정성 도모

- 의장이 제안설명 중에 제기된 정관상의 ‘사원’ 과 ‘회원’ 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관상에 있는 사원의 자구를 ‘회원’ 으로 일괄 변경코자 하는 안에 대해 가부를 묻자,
- (최재권) 정관 변경이 승인사항인지, 신고수리사항인지를 묻다. (박상우) 승인사항이라 답하다. (노병갑) 사단법인의 정관 개정은 모두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이라 부연하여 설명하다. (이상선) 정확한 워딩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정관상 사원으로 표기된 각 조에 표기를 회원으로 변경한다” 라고 제안하다. (최재권)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단서조항을 달아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 의장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발생이 안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단서로 하여 각 조항을 ‘회원’ 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하고 가부를 묻자, 다른 의견이 없어 총회원 만장일치(박수)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4호 의안

- 의장이 ‘제4호 의안(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을 상정하고, 박상우 사무처장이 제출된 자료집에 근거하여 제안 설명하다.
- 의장이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부를 묻자,
- (노병갑) 예산안 중 세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다. (의장) 차기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답하다.
- (이상선) 2014년 사업과제는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나 보조금 수입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충사넷의 주도적인 사업 전개보다는 예산 집행을 위한 중개기능 역할만 수행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당초 설립취지나 목적실현에 적합한 보조사업을 위해 일정정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잃지 않게끔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다. (의장) 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군 조직화 등 주도적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더 강구하겠다고 답하다.
- (박찬무)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활동일지 등을 생략하여 간략한 보고와 종이비용 절감 등에 대해 주문하다. 이어 중간지원조직의 자주성 제고에 대한 설명과 3년차 조직으로서 회원 중심의 회원확대 계획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주문하다. (박상우) 활동일지는 공적 조직으로서 향후 기록보존관리 차원에서 작성하고 보고하는 것이라 답하다. 이어 사업기초 중 중간지원조직의 자주성 제고에

	<p>대해서는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법인이 시민사회의 자발성, 독립성, 연대성을 견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내부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큰 사업의 틀로 이해되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 세부과제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고 답하다. 이어 회원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문이고 필수과제이지만 내부적으로 민간조직의 운영원리나 지속적인 훈련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 여겨지며, 2014년에는 예산안과 같이 100여명 정도의 진성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하다. (의장) 회원확대는 상근자들의 자기 확신과 표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생각된다고 부연하여 설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찬무) 민간조직으로의 자발성과 연대성은 당연히 가져가야 할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예결산서 상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복안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음을 재차 설명하다. (박상우) 애정어린 문제제기에 감사함을 표한 뒤, 2014년 예산안 중 보조금 사업비를 감액하여 책정한 것도 그러한 일환이라 설명하다. 이어 우리 조직의 현재적 처지와 여건을 볼 때 사회적경제 보조금 수탁기관이라는 굴레로 인한 선입견과 편견이 계속 된다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대라는 자학과 패배감만 증폭될 우려가 높다고 전제하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그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노라고 답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민간주도의 사경특위에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대체적으로 보조금 배분과 활용이 잘 구상되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와 다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사경 민간조직간 더 연대하고 연합하여 정책제안과 보조금 집행을 정상화시켜나갈 공동의 과제가 있다고 제안하다. - 의장이 추후 이러한 논의를 심도있게 해가기로 하고 다른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가부를 묻자 다른 의견이 없어 총회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5호 의안	- 의장이 ‘제5호 의안(기타안건)’ 을 상정하고 부의할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다.
회의록채택	- 의장이 총회원의 권한을 위임, 차기 이사회에 회의록을 제출하여 검토키로 하고, 기명날인인이 작성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회의록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다.
폐회선언	-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17시 20분에 총회를 마친다.

2014년 3월 27일

위와 같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서 기 방 명 조 (서명 or 인) 

서명날인인 김 중 수 (서명 or 인) 

박 기 남 (서명 or 인) 

2014년 감사보고서

보고자 : 조성희 / 문덕암 감사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2014년 사업 및 회계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시	2015년 2월 25일(수) ~ 2월 26일(목)
감사장소	
감사방법	서면감사
감사범위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및 회계 부문 일체

-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사업보고서 및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자금현황표 등을 기초로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의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업과 회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14년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대안사회운동체로서의 역할과 함께 위탁사업 지원기관으로서의 행정전달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창립 3년차의 신생조직임에도 짧은 시기에 괄목할만한 조직적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충남의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한 듯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2014년 서비스 노력과 운영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SEA보고서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사님들과 실무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이한 점은 민선6기에 대비한 사회적경제 전략보고서 작성, 그리고 아산 지역자활센터 수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또다른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역효과가 될 수 있음도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주어진 과업량 달성과 전달기능에 주력하다보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본래의 설립취지를 잃어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초심을 잃지않고, 지역사회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사업과 전략을 기획하면서 조직 전체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14년 회계 부문은 전년도에 발생했던 미지급금이나 퇴직급여적립금을 상당액 상환하고 적립하는 등 재무상태는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민간조직으로서 회원 중심의 독자적인 자원 마련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임원과 회원, 실무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위해 사무처는 회비 확보 방안 및 사회적경제 기금 모금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참여방법을 보다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체적으로 사업수행과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되었음을 감사 보고합니다.

감사 문 덕 암 (서명 or 인)

감사 조 성 희 (서명 or 인)



제1호 의안.

2014년 사업 및 결산보고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 박상우 사무처장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2014년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I. 2014년 사업보고

① 조직개요

1. 단체현황
2. 주요연혁
3. 조직체계
4. 임직원 현황
5. 가입연대조직 현황
6. 공공기관 참여현황
7. 업무협약(MOU) 체결현황

② 사업보고

1. 2014년 주요사업 보고
2. 2014년 사업별 · 부문별 주요 활동내용
3. 2014년 서비스 노력 및 성과보고서(SEA)

③ 사업평가

1. 비전 · 사명 · 가치
2. 2014년 사업기조 및 방향
3. 2014년 부문별 활동평가

II. 2014년 결산보고

① 운영성과표 (수지보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자금현황표

I. 2014년 사업보고

1 조직개요

1. 단체현황

- 설립목적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사업·마을만들기 등 풀뿌리 주민조직의 발굴 육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공익적 활동을 돕고 거들기 위한 충남지역 민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 설립연도 : 2012년 1월 19일
- 단 체 명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영문명 :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 단체성격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 대표자명 : 이윤기 이사장 (성공회 신부, 쌍용종합사회복지관장)
- 소 재 지 : (336-74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9130호
- 면 적 : 234.7㎡ (사무실 및 교육장)
- 대표전화 : 041-415-2012
- 홈페이지 : www.sechungnam.org
- 이 메 일 : sechungnam@gmail.com
- Fax 전송 : 041-415-2013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echungnam
- 블 로 그 : blog.naver.com/sechungnam

◆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 설립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립촉진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지원키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위탁시설
- 설립연도 : 2000년 8월 24일
- 센터명 :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 운영법인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15. 1. 26. 지정)
- 센터성격 : 사회복지시설(법인으로보는단체)
- 센터장 : 윤봉환
- 소 재 지 : (336-813)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104호
- 면 적 : 271.6㎡ (사무실 및 교육장)
- 대표전화 : 041-546-1814
- 홈페이지 : www.asjahwal.or.kr
- Fax 전송 : 041-542-1814
- 이 메 일 : asjahwal@hanmail.net

◆ 기타

-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지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충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행정자치부 지정, 충청남도)
- 충남 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 (충청남도 지정)

2. 주요연혁

- 2010 ~ 2011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준) 워킹그룹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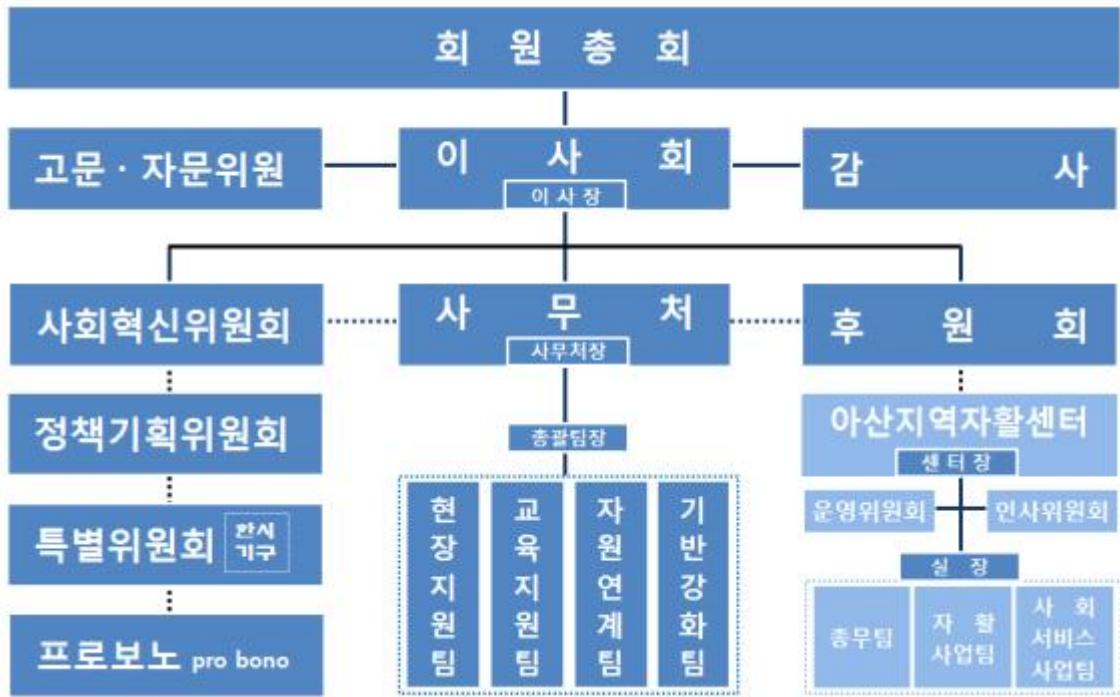
- 2012. 01.19.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총회(이사장 전성환, 사무처장 최선희)
- 02.28.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충청남도 제2012-1호)
- 03.02. 법인설립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등기과), 사업자등록(천안세무서)
- 03. 2012충남세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지정)
- 05. 2012충남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운영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1. 2012충남 희망그린 협동조합아카데미 중간지원기관(충남평생교육진흥원)

- 2013. 01.28. 사무실 이전(공주 정안면 소래이활성화센터 → 천안 나사렛대 랏드리지2관)
- 01. 2013충남세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 지정)
- 02.28. 사업자등록변경(면세법인사업자, 천안세무서)
- 03.28. 제2차 정기총회(이사장 보선 이윤기, 사무처장 박상우)
- 03. 2013충남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4. 2013충청권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기획재정부 지정, 대전·충남·충북 컨소시엄)
- 04. 2013충남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운영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6. 2013충남 희망그린 협동조합아카데미 중간지원기관(충남평생교육진흥원)
- 08.01. 충남 서북부권 분사무소 개소(홍성군 마을활력소,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10. 2013충남 협동조합현장지원센터 운영기관(충청남도)

- 2014. 01.27. 2014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진흥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지정)
- 01.29. 2014충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충청남도, 안전행정부 지정)
- 01.29. 사무실 이전(천안 나사렛대 랏드리지관 →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 02.03. 대표자 변경(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등기과, 천안세무서)
- 02.12. 2014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27. 제3차 정기총회
- 04. 2014충남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운영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6.18. 2014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전문기관 등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7. 2014충남 협동조합현장지원센터 운영기관((상담·교육·홍보분야, 충청남도)
- 08. 2014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교육컨설팅 운영기관(아산시)
- 10.10. 대전·세종·충북·충남(충청권)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창립
- 10.23. 제1차 임시총회(정관 개정, 온오프라인 회원투표)
- 12.31.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행정자치부)

- 2015. 01.26.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운영기관 지정(아산시, 보건복지부 지정)
- 02. 2015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진흥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지정)
- 02. 2015충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충청남도, 안전행정부 지정)
- 02. 2015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전·충남 컨소시엄)
- 02.27. 제4차 정기총회

3. 조직체계



4. 임직원 현황

- 고 문 : 박진도(상임) 이상선
- 자문위원 : 김제선 송두범 유정규 이은애
- 이 사 장 : 이윤기
- 감 사 : 문덕암 조성희
- 등기이사 : 이윤기 박상우 박찬무 이용재 최선희
 운영이사 : 김동수 김동준 김병빈 김영도 김오열 김지훈 박양순 박진용 안승화 윤성용 이재국 이지아 전성환
- 실행이사 : 강윤정 김기배 김종수 김진선 노병갑 박기남 안수영 최재권 (이윤기 박상우 박찬무 최선희)
- 정책기획위원회 : 김종수(위원장) 안수영 이수연 임상연 임화진 전대욱 전충훈 조현경 채종현 최준규 하승우
- 특별위원회 : 활동가고충처리위원 : 김진선
 성평등노동위원 : 안수영
- 사 무 처 : 사무처장 : 박상우
 총괄팀장 : 김민숙
 현장지원팀 : 박영식 박용원 이종현
 자원연계팀 : 신재학 방명조 박미란
 운영지원 : 유미나
 교육지원팀 : 이혁수 우종한 장은희 김지영
 기반강화팀 : 박정현 황은하 최승호

◆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 운영위원회 : 김기덕 김춘옥 노병갑 박진용 여운영 유지원 윤봉환 윤평호 이윤기 이원복 이한우
- 인사위원회 : 박상우 윤봉환 최현아 (미구성)
- 사 무 국 : 센터장 : 윤봉환
 실 장 : 최현아
 상근활동가 : 이은영 신민숙 정매리 이봉섭 김종현

5. 기업연대조직 현황

상설연대조직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전국협의회 : 감사(이윤기) • 대전세종충북충남(충청권)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 간사단체 수입 •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 공동대표(이윤기) •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 이사(이윤기) • 충남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정례모임 • 충남 사회적경제 청년포럼 보드몹 : 방명조 • (사)충남시민재단 : 이사(이윤기), 실행위원(박상우) • (사)풀뿌리사람들 : 이사(박상우) •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이사(김민숙) •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자문위원(박상우) • 부여군사회적경제협의체 : 위원(이윤기, 김민숙) • 홍성YMCA : 이사(박상우)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운영위원(박상우) • 세종정부출연기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연대조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 공동대표(이윤기) •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매립장 공동대책위원회

6. 공공기관 참여현황

공공기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위원(박상우, 김진선)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농수산분과위원(박상우 *종료) / 경제산업분과위원(김민숙)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박상우, 김종수, 박찬무, 안수영, 송두범, 노병갑) • 충청남도 3농혁신 지역혁신추진단 위원(박상우) • 충청남도 참여소통활성화기획단 위원(박상우, 박진용, 김오열, 김지훈, 강운정, 노병갑) •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위원회 위원(박상우) • 충남고용포럼 운영위원회 위원(박상우) • 충청남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실무심사위원(김민숙, 김종수, 강운정, 박정현, 이혁수 외)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실무심사위원(박상우, 최재권, 송두범, 윤성웅 외) • 천안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박상우) • 아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박상우) • 홍성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박상우)
협력기관 (사업심의)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농어업 6차산업화센터 모니터링 위원(이혁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 심사위원(박상우) • 천안시 지역공동체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분과 분과위원(이혁수) •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심사위원(박상우, 박진용) • 아산시 마을기업 심사위원(박미란) • 공주시 마을기업 심사위원(이혁수) • 서산시 마을기업 심사위원(박상우) • 예산군 마을기업 심사위원(이혁수)

7. 업무협약(MOU) 체결현황

기업 (12)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우리가 만드는 미래, HR어울림, 롯데백화점 대전점, 즐거운밥상, 프라미스온, 나눔커뮤니케이션, 바네스 디자인그룹, 대성새마을금고, 엠에프에스아이, 티에스비엔, 천안북카페 산세
학계 (10)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 고부가생물소재산업화지원지역혁신센터, 순천향대 창업보육센터, 나사렛대 산학협력단, 한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호서대 산학협력단, 한국보전생물학회, 충남교육연구소
공공기관 (4)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부여군
지자체 지원기관 (12)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희망리본본부, 아산지역자활센터, 공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천안아산소상공인지원센터,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천군 일자리종합센터, 서천군 발전전략사업단, 맑고푸른당진21, 천안NGO센터
종교계 (0)	
민간단체 (13)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풀뿌리사람들, 충북사회적경제센터, 품앗이생협, 풀뿌리희망재단,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산어촌체험관광협회, 한국농수식품무역협회,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천안YMCA, 아산YMCA, 가정울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당진지부
프로보노 (22)	특허법인 태동, Hup지원센터, SE파트너센터, 씨즈, 도시마을연구소, 오요리, 광명교육연대 갈등조정센터, 변호사 문현웅 법률사무소,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노무법인 벽성, 노무법인 율현, 노무법인 강산, 정진오 세무사사무소, 텍스인세무회계, 이시현 세무회계사무소, 안용철 세무회계사무소, 최완규 세무회계사무소, 정담 회계법인, 김태우 세무회계사무소, 이지아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동화, 법무사 권혁술 사무소
자원봉사 (3)	충남자원봉사센터, 조아라, 소랭이마을도농교류센터
언론사 (2)	농수산무역신문, 보령뉴스
협동조합 (3)	다울사회적협동조합, 세종정부출연연구기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우리동네

2 사업보고

1. 2014년 주요사업 보고

고 용 노 동 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세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위탁사업 (사회적기업, 180,000,000원) •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 위탁사업 (10개팀, 318,000,000원) • 충남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위탁사업 (22곳, 72,600,000원)
기 획 재 정 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세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위탁사업 (협동조합, 63,000,000원)
행정자치부+충남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마을기업 지원기관 위탁사업 (150,000,000원) • 충남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15,000,000원)
고용노동부+충남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자치단체 시범사업 수행기관 •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스토리북 제작 (50,000,000원) •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경영진단 실태조사 (70,000,000원)
충 청 남 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상담·교육·홍보 분야, 100,000,000원) • 충남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사업 (68,000,000원) • 충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사업 (25,600,000원) • 충남 사회적경제인 어울림 한마당 (50,000,000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11,000,000원)
한국여성정책개발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10,000,000원)
아 산 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교육컨설팅 운영기관 (17,670,000원) •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탐방 (11,100,100원) •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회 (2,790,000원)
보 령 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체 교육사업 (10,000,000원)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 상권 활성화를 위한 GOOD 점포 창업 지원사업 (10,000,000원)

2. 2014년 사업별 · 부문별 주요 활동내용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 인증 및 인증지원 : 인증/지정 설명회(10회 이상), 지역별 인증설명회(6회 이상), 사회적기업 발굴(20개 이상)
 - 상시 경영상담 및 현장지원 :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상시상담, 사후관리 경영상담(30건), 현장방문(연2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12회)
 - 행정지원 : 재정지원사업 현장실사 및 실무심사 지원(충남4회, 세종2회), 인증 현장실사, 합동점검, 월간보고 등
 - 교육 및 홍보
 - 일반인 대상 교육 : 사전교육(2회), 찾아가는 사경교실(월1회), 프로보노 전문가교육(2회)
 - 사회적기업 대상 교육: 신규교육(2회), 인사노무세무회계 교육(2회), 정기교육(2회)
 - 활동가 대상 교육 : 이론실습 및 역량강화교육(월1회)
 - 홍보 : 웹진 발간(월1회), 홈페이지 운영, SNS 활용, 보도자료 상시제공
 -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분기별 1회 이상)
 - 경영지원 및 자원연계 : 기초컨설팅(4개), 심화컨설팅(30개), 소셜미션컨설팅(10개), 유통망 구축 지원(4개 이상)
 - 신규모델 발굴 확산 : 청년캠프, 소셜벤처 지원
 -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 기구축된 DB 유지관리 및 통계 분석
-

◇ 마을기업 지원기관

-
- 마을기업 선정지원 : 30개소(신규15, 재지정15)
 - 설립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입문 1회, 기본 3회, 심화 3회
 - 신규모델 발굴 확산 : 도시형 유통형 마을기업 인큐베이팅(2개소)
 -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 : 현장지원(14지정 30개소*3회, 자립형 60개소)
 - 전문기관 경영컨설팅 : 신규지정 및 자립형 마을기업 대상(90건 이상)
 - 마을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오리엔테이션, 역량강화교육(2회 이상),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마을기업 판로지원 : 매출 70,000천원 이상, 생협 등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5곳 이상), 1사 1마을기업 결연(시군별 1건 이상), 지역축제 및 대형유통매장 연계행사(3회 이상),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2회), 시군별 직거래 장터 행사지원(1회 이상), 상품 웹 홍보물 제작 배포(수시), 판로처 연계(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 홍보지원 : 홈페이지(SNS) 및 언론보도(수시)
 - 네트워크 구축 : 공동 워크숍(견학 포함, 1회 이상)
-

◇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
- 설립 상담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 : 고객관리(CRM) 운영, 전화 및 방문상담(80회 이상), 전화 상담보고서 작성,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지원(10회 이상), 인가워크숍(2회 이상)
 - 상시 경영상담 및 현장지원 : 종합경영상담 설명회(2회 이상), 프로보노 정기모임, 협동조합 DB 운영, 현장조사(12회 이상) 및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교육 및 홍보 : 설립희망자 교육(12회), 전문심화교육(3회), 계층별 협동조합 창업과정 개설(2회), 홍보문자 발송(20회 이상), 웹진 발행(5회), 오마이뉴스 사경 특별섹션 운영(6개월간)
 -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 우수사례 리포트(4회), 자활공동체 등 협동조합 전환 워크숍, 신규모델 발굴 확산
-

◆ 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 (설립지원, 교육, 운영상담 및 홍보 분야)

- 설립지원
 - 도내 협동조합 실태분석 : 운영실태 및 현황조사(제품/서비스 분석), 설립 사례집 제작, 조합DB 구축
 - 찾아가는 협동조합 설명회 : 찾아가는 설명회(30회 이상), 교재 제작, 설립희망자 정기교육(15회이상)
 - 설립준비자 상담 및 제반서류 검토 : 설립신고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 내방상담실 운영
 - 교육 및 운영상담
 - 현장상담 : 상담기록카드 작성
 - 경영 등 전문분야 교육지원 : 세무회계 전문상담실 운영(3회), 세무회계/인사노무 교육, 의사소통 및 조직관리 교육(2회), 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관리 교육(2회 이상), 연합회 설립 및 네트워크 지원교육
 - 각종 지원제도 연계(se, cb 진입 유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도 설명회(1회)
 - 협동조합대학 운영 : 신나는 협동조합대학 운영(12회차 과정, 수료식 및 선진지탐방 1회)
 - 홍보
 - 협동조합의 날 및 주간행사 : 1회 이상
 - 홍보물 제작 배포(영상물, 포스터) : 웹진 발행 및 신문기획 연계, 홍보자료 활동영상 기록관리 보존
-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

- 발굴 : 신규 창업팀 발굴, 30개 이상 참여신청, 20개 창업팀 발굴
 - 창업 : 성공(매출, 고용 100%), 보통(창업 100% 달성)
 - 멘토링 : 정기면담 및 상담, 대면(월4회), 유선, 메일, 방문 상담(수시)
 - 공동프로그램 : 공동워크샵(반기별), 기관 및 창업자팀 간담회(분기별), 대표자회의(월1회)
 - 교육 : 사전교육(1.5배수 참여), 의무교육(사회적미션, 갈등해결, 세무회계, 법무 등), 역량강화교육(행정실무 등)
 - 컨설팅 : 사전진단(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가 자질), 경영진단(사회적미션, 사업모델)
 - 네트워크 : 네트워크 파티(창업팀간, 사회적기업가와 함께)
 - 자원연계 : 프로보노 구축, 기업 연계(사업발현, 투자 설명회, 년1회 이상), 각종 공모사업 안내
 - 홍보 : SNS 활용, 창업팀 홍보리플렛 제작, 뉴스레터 및 보도자료 수시 제공
-

◆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자치단체 시범사업 수행기관

- 퇴직전문인력의 전문지식과 경력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전접수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컨설팅 지원
 -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세무, 법률/법무, 외국어, IT/정보화, 특허/상표출원, 행정지원등
 - 공헌활동시간 : 1인당 월 120시간, 연간 최대 480시간
 - 퇴직전문인력 : 교통비, 식비 등 활동실비(1일 4시간 이상 8,000원), 참여수당(시간당 2,000원) 지급
-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사업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군별 순회 교육(워크샵)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워크샵
 - 마을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샵
-

◆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경영코칭)

- 인사노무 분야 :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리 등 인사 노무관리 방법 제시
 - 회계세무 분야 : 회계관리지도, 사업현황 분석(원가, 사업타당성, 비교분석 등)
-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제도, 사례분석, 사회적경제의 역사, 협동조합,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사전교육(상하반기) : 소셜미션, 비즈니스모델, 사회적기업과 지원제도, 실제 운영사례 소개
 - 신규 사회적기업 오리엔테이션 : 중간지원조직, 소셜비전과 비즈니스 모델, 실제 운영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 사회적경제 조직 직무교육(상하반기) : 인사노무(5시간씩 2일간), 세무회계(3시간씩 4일간)
 -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교육(방문교육) : 사회적경제,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목적과 가치실현, 소셜미션
 -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양성교육 :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원리, 자원연계 방안, 경영컨설팅
 - 도시형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리더 양성 교육 : 마을살이, 도시재생,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 지역살림
 - 사회적경제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OT, 사경 정책 현황과 전망, 분야별 정책분석, 정책개선,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협업화 교육(3회) : 아이스브레이킹, 사경 Talk Talk, 투게더 두 개더, 우리는 食口
 - 사회적경제 사업체 필요교육 지원사업 : 직원 비전 워크숍, 직무능력 강화, 고객관리 및 서비스, 의사소통/회의
 - 사회혁신가 육성 지원 교육
 -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론 교육(30시간) : 리더쉽, 조직의 이해, 회의운영과 의사결정, 기획과 전략
 - 예비)사회적기업 창업팀 역량강화 교육(선진지견학 포함) : 창업팀간 네트워크 강화, 선진사례 학습
 - 사회적경제 청년캠프
-

◆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경영진단 실태조사

- 조사설계 : 조사Tool 개발, 기업현황표 작성, 시범조사
 - 현장방문 - 경영능력진단 : 현장방문 진단표 작성, 1차 보고서 작성
 - 그룹별집합 - 집합진단 : 워크숍, 집단 컨설팅
 - 종합평가 및 보고 : 종합보고서, 기업별 보고서, 평가표
-

◆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스토리북 제작

- 사회적기업 모범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작가들이 취재 집필한 스토리북과 사회적기업 제품 카다로그 제작
 - 따숨따숨따숨 / 충청남도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 e-Book 별도 제작, 대국민 무료서비스
-

◆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개발 용역사업

- 입문과정 : 협동조합 여성 공동체 창업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 수립
 - 기본과정 :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사례, 마을자원조사와 의제 발굴, 마을기업 사업화 방안, 여성과 지역혁신
 - 심화과정 : 여성 리더쉽, 공동체 의사소통, 회의기술 → 여성친화적 경제공동체 조직 설계, 사업계획 구체화
 - 참여그룹 인터뷰 및 분석조사 → 종합 분석 및 모델링 보고서 집필 → 용역 결과보고 및 납품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사회적경제 기업가 MBA과정
 - 시군별 사회적경제 열린아카데미 :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

◆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교육 및 컨설팅 / 활동결과 공유대회(매듭파티)

- CB관점의 종합적인 마을조사 및 참여단체 수요파악 : 국내 사례조사, 현장 모니터링
 - 업종, 공동체 형성 수준에 따른 공동워크샵 개최 : 씨앗(마을자원조사, 의제 발굴), 새싹(사업계획 수립)
 -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협력, 맞춤형 필요 컨설팅 지원 : 찾아가는 전문멘토 컨설팅, 정기 내방상담센터 운영, 여성 협동경제 공동체 모델 발굴(2개소)
 - 마을공동체 활동 결과공유 및 참여단체 네트워크 구축 : 활동결과 공유회, 마을공동체 컨퍼런스
-

◆ 보령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체 교육사업

-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 현장에서 배운다. 비즈니스 실전교육
 - 공동체 워크샵(일반중사자 대상) : 우리는 하나, 공동체를 위하여
-

◆ 부여군 상권활성화를 위한 GOOD점포 창업 지원사업 - 청년 소셜벤처 창업과정

- 부여지역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 사업공고 → 기본교육 과정(9강, 22시간) → PPT발표 및 대면심사(3개팀 선발) → 창업컨설팅 과정(3개월간)
-

3. 2014년 서비스 노력 및 성과보고서 (Service Efforts, Service Accomplishments, SEA Report)

	2012	2013	2014
I. 투입			
1. 지출 (단위:원)	509,679,553	1,583,438,884	1,321,224,986
2. 등록회원	21	60	118
3. 총 직원수 (단위:명)	7	16	17
II. 산출			
1. 사회적기업			
① 인증 및 인증지원			
인증	6	13	20
예비se 지정	34	28	
인증 설명회 개최	5	14	16
인증 지원(유선/내방)	-	333 / 174	438
컨설팅 지원(유선/현장방문)	137	242 / 171	
인증se 사후관리 지원	26	-	91
② 재정지원사업 지원			
전문인력지원사업 심사 지원	8	57	6 (충남4/세종2)
예비se 지정 심사 지원	63	95	
일자리창출 심사 지원	63	85	
사업개발비 심사 지원	31	72	
③ 네트워크 구축 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	28	57	130
토론회, 학술대회, 워크숍 개최	21	11	
se대표자 간담회	3	3	
프로보노 풀 구축	47	95	
자원연계	60	131	
판로개척 및 실적 (건수/금액)	94	5 / 26,740,000	84
개별기업 경영지원 및 자원연계			38
④ 신규모델 발굴 및 인큐베이팅			
신규모델 발굴	6	4	2
인큐베이팅	4	-	
우수사례	37	63	
⑤ 교육			
사회적기업가 양성교육	13	18	
일반인 대상	16	54	58
사회적기업 대상	6	42	6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8	29	55

⑥ 홍보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	0	0	165
웹진 제작 및 발송	-	8	11
보도자료	-	14	15
간행물	-	10	-
2. 마을기업			
① 컨설팅			
마을기업 수	32	39	
컨설팅 지원 (현장/내방/유선)	372	416	50 / 4 / 1,428
② 교육			
교육	41	129	24
워크샵	5	7	6
선진지 견학	6	4	1
③ 재능나눔 네트워크			
자원연계	46	42	
네트워크 (마을기업/전문가/유관기관)	16	62	2 / 46 / 20
④ 홍보			
방송, 언론 보도건수	24	60	11
온라인뉴스매체 보도건수	16	13	4
SNS 홍보건수	23	84	52
⑤ 관리			
박람회, 직거래장터 등 개최, 참여건수	5	5	
홍보동영상 제작건수	3	1	
홍보전단지 제작건수	5	45	
홈페이지 제작건수	5	10	
간담회 개최	38	28	52
설명회 개최	6	22	7
마케팅 및 판로지원			50
3. 협동조합			
① 현황			
협동조합 수		5	
사회적협동조합 수		109	
유형(사업자/다중이해관계자/직원/소비자)		62 / 39 / 5 / 3	
총출자금		1,956,825,000	
총조합원 수		1,283	
② 설립상담 및 인가지원			
상담 (유선/방문)		280 / 89	372

서류검토 (일반/사회적협동조합)	-	
인가 지원		43
인가 워크숍		2
③ 경영상담 및 현장경영지원		
종합경영 상담 설명회	4	
프로보노 정기모임	-	
협동조합 현장조사		78
④ 교육		
설립희망자 교육	22	24
전문심화교육		3
계층별 협동조합 창업과정		3
자체 교육프로그램	34	
외부기관과의 공동교육	11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18	
⑤ 신규모델 발굴		
신규모델 발굴	-	
인큐베이팅	-	
우수사례 및 신규사례 리포트		1
⑥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	-	
토론회, 학술대회, 워크숍	-	
coop대표자 간담회	-	
자활공동체 등 coop전환 워크숍		
⑦ 홍보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	48	
웹진 발행		11
SNS 활용	42	360
언론보도	18	
4. 창업지원(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① 발굴 (공모/선정)	31 / 15	17 / 10
② 창업 (성공/보통)		
성공 (매출, 고용 100% 달성)	10 / 3 / 1	
보통 (창업 100% 달성)	2	5
③ 멘토링		
정기적인 면담 상담 (유선/면담/방문)	10 / 3 / 1	137 / 2 / 29
공동 워크숍 (분기)	2	3
④ 공동 프로그램		

간담회 (분기)		2	10
토론회 (반기)			
⑤ 교육			
사전교육 (1.5배수 이상 참석) (단위:명)		35 (충북34)	38
창업팀 교육 (OT, 비전, 세무회계, 직무)		3	3
위탁기관 교육		1	
⑥ 컨설팅 (경영진단)			2
⑦ 네트워크 (소셜파티)		1	1
⑧ 자원연계 (프로보노 풀 구축)			14
⑨ 기타 (육성사업 외 창업 지원 건수)			
Ⅲ. 효율성 지표			
1. 사업			
① 총 수탁사업수	8	17	20
② 총 수탁사업비	477,832,240	1,468,926,178	1,131,898,424
③ 직원 1인당 사업비용	59,729,030	81,607,009	70,743,651
2. 회원			
① 증가 회원수(등록회원)	21	60	118
② 정기회비 납부자수	-	39	98
③ 등록회원 1인당 금액 (월)			10,640
④ 납부회원 1인당 금액 (월)			13,600
3. 임원			
① 임원(이사/감사) 수	18	30	44
② 이사회 개최	2	7	13
③ 이사회 참석율	-	-	77.2
4. 자원활동			
① 프로보노 수	60	112	
②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수	51	56	73
Ⅳ. 설명적 요소			
1. 직원 1인당 회원수	2.6	3.7	7.3
① 입사 (정규직에 한함)	8	13	4
② 퇴사	1	3	4
2.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부담율	23.9	15.6	31.6
3. 총수입 대비 자립재원 비율	7.0	5.7	15.3

3 사업평가

1. 비전 · 사명 · 가치

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한다. 호혜와 협동에 기반한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화를 위해 돕고 거드는 건강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나아간다.
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과 연대, 순환과 공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창조
가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노동, 지역, 호혜, 협동, 참여, 자치, 혁신, 공생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지역화(loc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 목표 : 지역에 기반한 1,000개의 풀뿌리조직 발굴과 지속가능성 확장 - 정성적 목표 : 사회적경제 주류화와 지역화를 통한 풀뿌리자치 실현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기책임과 혁신, 협업과 공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충남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회혁신형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사회적경제 조직간 상생거래 및 지역 네트워크 확장 사회적경제 운동의 지속가능성 확장과 자주적 생태계 조성

2. 2014년 사업기조 및 과제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활동주체의 역량 강화 및 충남형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사업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주성을 제고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혁신하자! 지역내 사회적경제의 활동주체 역량을 강화하자!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자! 도민주도형 사회적경제로 지역민의 삶과 밀착되는 대중화를 모색하자!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을 모아 핵심주체를 발굴하고 사회혁신형 모델을 창출하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자!
사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형 중간지원조직으로의 혁신과 독자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내부사업 자기책임-혁신-통합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경 조직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당사자조직의 자조역량 강화 및 협의체, 시군별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눈높이 교육 및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사업 사회적경제 추진주체의 형성과 활동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소셜 커뮤니티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윤리적 소비 촉진과 판로 지원사업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형 모델 발굴육성을 위한 자원연계 및 지역 연대사업

3. 2014년 부문별 활동평가

◆ 현장지원팀

사 회 적 기 업	-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정기적인 내방상담 등을 통해 2014년 인증 18개소, 예비 22개소 증가.
마 을 기 업	- 마을기업 지원기관 3년차로 행정지원, 현장실사 등 지원체계 안정화 단계에 돌입 - 사업 분야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에 노력함. - 위탁사업 외에 목적사업의 증가로 업무량과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횟수가 낮아짐.
협 동 조 합	-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해 연간 400여회에 달하는 설립상담(내방·전화) 진행 - 찾아가는 협동조합 설명회(40회 이상)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였고, 보다 건강한 풀뿌리조직형 협동조합의 육성을 유도하였음. -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장의 수요를 모두 담보해 내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

◆ 교육지원팀

사 회 적 기 업	- 일반인 대상(일반인, 전문프로보노 교육), 당사자조직 교육(소셜미션, 종사자교육, 경영기초교육 등) 등을 수행하였으며, 각 교육별 커리큘럼을 체계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됨. -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후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함.
마 을 기 업	-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목적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화, 강사풀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음. -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육평가나 사후관리 부분이 미흡해짐. - 모니터링, 컨설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교육 정례화가 요구됨.
협 동 조 합	- 위탁사업 과업 중심의 교육 수행을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교육 기획 진행 - 충남광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영화상영회(10여회) 등 자활 주체들에 대한 협동조합 관심 고취. - 협동조합대학, 경영 및 조직관리, 지원제도 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사업 수행을 통해 협동조합과 관련된 교육 커리큘럼 확장.

◆ 자원연계팀

사 회 적 기 업	-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등과 “따숨상회” 를 공동 기획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망 확장을 위해 노력함. - 프로보노 및 컨설턴트의 참여기회 제공(CSR포럼, 프로보노 양성교육 및 성과대회 등)과 확장을 위한 후속으로 활성화 체계 구축과 강화 노력이 요구됨.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업무협약 체결 후 일시적으로 협업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앞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공조가 가능한 협업사업 발굴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	---

	가 필요함.
마을기업	- 도내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 풀이 확장됨. - 1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자원연계 이후 공동 평가나 지속적인 역할 분담(관리) 필요
협동조합	-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자원연계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제고 - 아산지역 협동조합간 협업 지원.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한마당 공동 부스 운영 등) - 광역·기초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연합회 및 협의회 구성은 부진. 지역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전략과 모델링 필요.

◆ 기반강화팀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90% 완성) -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함.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사회적경제 정책 생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보다 섬세한 설계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기업 경영진단 및 실태보고서를 제작함. 향후 실태보고서에 기반한 현장지원과 교육지원 등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사업체 자료에 대한 DB 구축과 관리, 활용이 매우 미흡함.
마을기업	- 기업별 모니터링, 상품/서비스에 대한 기본 DB 구축. (2010-11년 지정기업은 다수 누락) -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나 조사에 대한 협조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 DB 자료의 상이한 내용에 대한 보완과 활용도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 현황 및 교육 수요조사 완료(100여개 대상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충남 협동조합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
창업지원 (육성사업/소셜벤처)	- (창업지원시스템) 당초 10개팀을 최종 선정하였으나, 중간평가 시점에서 1개팀 자진포기로 인해 9개팀 육성 지원. 현재 6개팀이 법인설립을 완료한 상태로서, 2개팀(아산아소, 아산꿈나무마을)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였음. 2015육성사업은 조직내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 대전 풀뿌리사람들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계획임. - (자원연계) 지역사회와 협업 방식으로 각 창업팀별 맞춤형 자원연계와 중개자 역할 수행 (도란도란/로라로라 등, 에이스벤처라 부여성권활성화사업, 세무노무 프로보노 연계 등). 조직 내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원연계를 통해 4기 창업팀에 대한 위탁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높게 평가됨. - (행정지원) 육성사업과 법인내 행정 처리방식 및 서식 사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행정 일원화 내지 연동 가능토록 개선이 필요함. 또한 위탁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회계와 행정 처리에 대한 보완과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됨. - (실무역량) 법인설립 및 회계, 노무 등 창업 단계별 지원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II. 2014년 결산보고

1 운영성과표 (수지보고서)

1. 수입부

계정	항목	2013 결산	2014 예산	2014 결산	증감율(%)	
사업수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7,806,200	18,000,000	10,300,000	31.9
	후원금수입	일반후원금	4,411,410	10,000,000	6,600,000	49.6
		지정후원금	-	-	7,291,000	-
	목적사업수입	기획사업수입	22,000,000	50,000,000	57,598,414	161.8
		강의외래수입	-	15,000,000	15,345,113	-
		기타수입	-	-	993,580	-
	수익사업수입	용역사업수입	55,990,000	80,000,000	105,670,000	88.7
		광고협찬수입	-	-	0	-
소계		90,207,610	173,000,000	203,798,108	125.9	
사업외수입	사업외수입	이자수익	23,443	-	127,735	444.8
		잡수익	-	-	203,305	-
	소계	23,443	-	331,040	1,312.1	
일반회계 수입합계		90,231,053	173,000,000	204,129,148	126.2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보조금	1,468,900,000	1,193,000,000	1,131,700,100	-22.9
		예금이자	26,178	-	198,325	657.6
특별회계 수입합계		1,468,926,178	1,193,000,000	1,131,898,425	-22.9	
당해년도 수입합계 (a)		1,559,157,231	1,366,000,000	1,336,027,573	-14.3	

※전년 대비 증가율 $\{(14\text{결산}-13\text{결산})\div 13\text{결산}\times 100\%$, 예산 대비 달성율 $\{(14\text{결산}\div 14\text{예산})\times 100\%$

◇ 평가

- 총 평
- 전년 대비 특별회계 수입분은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는 증가 추세임(전년대비 126.2% 증가, 14예산 대비 117.9% 달성).
 - 정상적인 회계보고 및 온라인 공개를 위해 계정과목과 수입지출 시산을 맞춘 상태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였고 관항목 3단계로 구분하였음. (2014.12.31. 현재, 예금/현금 보유잔액과 회계장부상 잔액 시산 확인)

- 항목별평가
- 회비수입 : 정기적인 회비(CMS, 자동이체). 소폭 증가
 - 일반후원금 : 비지정후원금. 프로보노/멘토의 기부금, 사무실 이전개소식 후원금 등 증가
 - 지정후원금 : SE기금 적립 신설. 차량지원(400), 청년지원(140), 일반(139), 기타(50) *과목분류
 - 기획사업수입 : 기획사업 및 교육 참가비, 사업추진에 특별후원금 등 증가
 - 강의외래수입 : 실무자 외부강의 및 회의참석수당 수입 *과목분류
 - 용역사업수입 : 컨설팅 및 연구용역사업 수입 증가. se기초컨설팅(7,260), 아산시 컨설팅(1,760), 연구용역(1,000), 실태조사(450), 교육의뢰(90)

2. 지출부

계정		항목	2013 결산	2014 예산	2014 결산	증감율(%)
사 무 운영비	인건비	급여	8,173,800	10,000,000	43,058,410	426.7
		사회보험료	37,208,144	25,000,000	14,980,348	-59.7
		상여금	-	-	0	-
		퇴직급여	4,401,600	20,000,000	6,306,150	43.2
	소계		49,783,544	55,000,000	64,344,908	29.2
	운영비	복리후생비	1,167,600	1,000,000	2,163,800	85.3
		여비교통비	1,465,150	1,000,000	3,186,333	117.4
		통신비	29,720	100,000	210,380	607.8
		수도광열비	505,100	800,000	852,000	68.6
		지급임차료	3,984,000	8,000,000	4,323,120	8.5
		수선비	133,000	200,000	3,330,000	2,403.7
		보험료	4,774,510	5,000,000	5,602,760	17.3
		도서인쇄비	139,500	300,000	1,464,880	950.1
		소모품비	2,928,632	1,000,000	900,670	-69.2
		비품구입비	-	-	8,777,300	-
차량유지비		-	-	0	-	
지급수수료	320,560	1,000,000	1,137,000	254.7		
잡비	-	400,000	322,910	-		
소계		15,447,772	18,800,000	32,271,153	108.9	
사업비	목적사업비	지정사업비	-	-	0	-
		기획사업비	-	-	0	-
		조직사업비	3,574,100	2,000,000	7,028,890	96.6
		교육사업비	73,700	1,200,000	3,145,900	4,168.5
		홍보사업비	-	400,000	102,000	-
		연대사업비	-	500,000	1,720,000	-
	업무추진비	-	-	0	-	
소계		3,647,800	4,100,000	11,996,790	228.8	
수익사업비	용역사업비	45,633,590	-	72,280,690	58.4	
	사업손실비	-	-	8,182,780	-	
소계		45,633,590	-	80,463,470	76.3	
사업외 비용	사업외비용	이자비용	-	-	0	-
		잡비용	-	100,000	250,240	-
	소계		0	100,000	250,240	-
소계 (예비비)		-	15,000,000	0	-	
일반회계 지출합계			114,512,706	93,000,000	189,326,561	65.3
보조금 지출	보조사업비	인건비	360,367,900	-	*	-
		경비	169,544,413	-	*	-
		사업추진비	710,009,666	-	*	-
		일반관리비	-	-	*	-
소계		1,239,921,979	1,273,000,000	1,049,317,577	-15.3	
소계 (국고반납)		65,136,047	-	36,612,577	-43.7	
소계 (계속사업)		163,868,152	-	45,968,271	-71.9	
특별회계 지출합계			1,468,926,178	1,273,000,000	1,131,898,425	-22.9
당해년도 지출합계 (b)			1,583,438,884	1,366,000,000	1,321,224,986	-16.5

당기수지 차액 ① a-b		-24,281,653	0	14,802,587	
기 타	미지급금의 발생 (-)	-24,896,453	-	0	
	미지급금의 결제	1,422,400	-	24,896,453	
	예수금 (-)	-	-	0	
	예수금의 결제	-	-	0	
	단기차입금 (-)	-44,000,000	-	-5,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44,000,000	-	5,000,000	
	장기차입금 (-)	-	-	-1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	-	0	
	퇴직급여충당금의 발생 (-)	-22,574,730	-	-26,266,900	
	퇴직급여적립금	-	-	43,538,897	
	퇴직급여적립금의 상환	4,401,600	-	6,306,150	
임차보증금	1,300,000	-	0		
임차보증금의 처분 (-)	-1,300,000	-	0		
소계 ②	-41,647,183		45,765,600		
전기 이월금 ③		-7,124,667	-	-73,053,503	
차기 이월금 ①+②+③		-73,053,503		-12,485,316	
기 금	기금의 적립	-	-	7,291,000	
	기금의 처분 (-)	-	-	0	
	기금의 환수	-	-	0	
	소계	-	-	7,291,000	

◆ 평가

총 평

- 대체적으로 2013년 대비 일반회계 지출이 크게 증가함. 2013년 대비 65.3% 증가
- 당기수지는 전년도 미지급금 전액을 상환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퇴직급여도 90.1% 적립한 상태.
- 당기수지는 보다 안정화된 듯 보이나, 여전히 사무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경비 대부분이 위탁사업비(보조금)로 유지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라 할 수 있음.

항목별평가

- 급여 및 사회보험료 :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거나 신규채용 전후에 발생하는 급여와 4대보험 사업주부담분. (김용희, 박상우, 서명희, 김민조, 신재학, 우중환, 황은하 등)
- 퇴직급여 : 민대기, 손숙영 지급분
- 복리후생비 : 실무자 생일 및 회식비, 명절 선물 등
- 지급임차료 : 복사기/생수/이카운트 비용 일부 부담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증가
- 수선비 : 사무실 이전에 따른 칸막이 공사, 에어컨 설치 보수비용 등
- 보험료 :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비용 발생
- 비품구입비 :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및 PC 사무기기 구입비용 등
- 지급수수료 : 송금수수료 외에 공증 등기수수료 등
- 조직사업비 : 총회 및 사무실 이전개소식, 이사회, 연말 실무자 포상비용 등
- 교육사업비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기념품 제공, 실무자 외부교육비 지원 등
- 연대사업비 : 경조사 회환, 분담금 및 지역 연대사업 비용
- 사업손실비 : 2013오피스지원(244), 2013설립전교육(18), 2014육성사업(555) 정산후 환급

2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1. 유동자산	17,680,810	1. 유동부채	0
(1) 당좌자산	17,680,810	(1) 유동부채	0
현금	171,970	단기차입금	0
보통예금	10,217,840	미지급금	0
기타(기금)	7,291,000	예수금	0
2. 비유동자산	43,538,897	2. 비유동부채	60,517,087
(1) 투자자산	43,538,897	(1) 비유동부채	60,517,087
퇴직급여적립금	43,538,897	장기차입금	10,000,000
임차보증금	0	퇴직급여충당부채	50,517,087
(2) 유형자산	0	부채총계	60,517,087
차량운반구	0		
비품 및 집기 (감가상각누계액)	8,777,300 (8,777,300)		
		순자산	702,620
		1. 잉여금	702,620
자산총계	61,219,707	부채와순자산총계	61,219,707

3 자금현황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1. 현금	171,970	1. 보통예금	82,580,848
2. 보통예금	61,047,737	(1) 농협	36,528,588
(1) 법인운영비	10,217,840	사회적기업	20,637
농협 ***4739-93	10,000,000	협동조합(국비)	669,267
신한 ***969647	217,840	마을기업 ***1451-61	8,303,122
(2) 퇴직적립금	43,538,897	설립전교육 ***1441-11	2,276,980
농협 ***8783-81	43,538,897	아카데미 ***9423-21	10,544
(3) 기금	7,291,000	협동조합(충남) ***8077-03	6,996,781
농협 ***8782-41	6,791,000	평생교육원 ***9097-43	1,432,500
농협 ***5265-63	500,000	보령시	47,160
		스토리북 ***6148-43	6,827
		경영실태조사 ***4223-01	303,235
		네트워크 ***3440-53	7,351,558
		어울림한마당 ***5968-11	350,996
		부여상권활성화 ***5973-71	7,017,234
		아산시사례탐방 ***5971-01	1,741,747
		(2) 신한	46,052,260
		육성사업(11개)	46,052,260

올해의 모범회원상, 공로패 수상자 명단

올해의 모범회원상

안수영 회원(충남여성정책개발원)

위 회원은 우리단체 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청년활동지원기금 후원과 상시적인 자원활동, 또한 사회적경제 여성 참여도 조사 등을 추진하며, 사람과 사회를 잇는 아름다운 충남을 만드는 회원참여의 모범을 보여주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2월 27일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윤기

공로패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前센터장 송두범

사람과 사회를 잇는 아름다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운동에 함께 한 당신의 노력이 아름답습니다.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헌신하신 당신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2월 27일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윤기

제2호 의안.

임원 선출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 박상우 사무처장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이사회 추천으로 제2기 임원 후보안을 제출하오니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총회 이후, 임원수입 승낙서를 받지 못한 분은 수입의사를 확인하여 선출토록 이사회에 위임 바랍니다.
- ② 사회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 권한으로 총회 직후 지역별/부문별/세대별 추가선임이 가능함.

이사 및 감사 후보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책	현직	지역	비고
이 사 장	이윤기	쌍용종합사회복지관장, 성공회 신부	이 사 장	천안	유임
감 사 (2)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운영위원	세종	
	하승수	변호사/회계사	-	홍성	
이 사 (12)	강윤정	천안NGO센터장	실행이사	천안	유임
	김기배	노무사	실행이사	천안	유임
	김지훈	충남시민재단 실행위원장	운영위원	아산	
	김진선	협동조합우리동네 이사장, KYC공동대표	실행이사	천안	유임
	노병갑	충남광역자활센터장	실행이사	아산	유임
	박상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등기이사	홍성	유임
	박찬무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장, 즐거운밥상	등기이사	아산	유임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실행이사	대전	유임
	윤봉환	아산지역자활센터장		홍성	
	최선희	별빛아래달빛빵집 대표	등기이사	천안	유임
	최재권	나사렛대 평생교육원장	실행이사	아산	유임
박용원	충사넷 평간사협의회(준) 대표 *미정				

사회혁신위원회 후보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책	현직	지역	비고
사회혁신 위 원	강경림	크루셜텍 재무이사			
	고경호	前충남경제진흥원장		천안	
	공정해	천안KYC 공동대표		천안	
	김만석	서천 순환경제순터 사무국장		서천	
	김연수	前교사		서울	
	김오열	충남광역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운영위원	홍성	
	김의수	前전북대 교수, 지방분권자치		천안	
	김재강	단국대 교수 창조창업창직 교육센터			
	김중수	충발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정책위원장	세종	
	노재정	부여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부여	
	노중호	목사		논산	
	문덕암	목사, 이든밥상 대표	감 사	서산	
	박기남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실행이사	아산	
	박소산	사과나무		아산	
	박진용	아산YMCA 사무총장	운영위원	아산	
	박창남	나사렛대 사회복지 교수		천안	
	박현수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아산	
	배연근	공생공소 대표		공주	
	배한호	천안아산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장		천안	
	복권승	지천생태모임 대표, 마을만들기 코디		청양	
	안병일	적정기술사회적협동조합		천안	
	오창석	(주)명풍		천안	
	유연호	순천향대 교수	육성사업운영위원	아산	
	윤 선	아카데미 소장			
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주재 기자		아산		

이상진	前충남마을기업협의회 부회장		예산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 교수	등기이사	천안	
이평주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서산	
이효희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상무		아산	
정경록	천안협동사회경제트위크 대표		천안	
조성희	충남교육연구소 사무국장	감 사	공주	
최영준	나눔커뮤니케이션 대표		천안	
최 철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홍성	
최현아	아산지역자활센터 실장		아산	
허종일	태안의료원, 前천안의료원장		태안	
홍승미	아산YMCA생협 이사장		아산	

고문 및 자문위원 / 정책기획위원회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책	현직	지역	비고
상임고문 고문 (3)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前충남발전연구원장	자문위원	서울	유임
	고광성	치과의사		홍성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운영위원	청양	
자문위원 (6)	김동준	성공회대 교수	운영위원	경기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자문위원	대전	유임
	박성호	풀뿌리희망재단 상임이사		천안	
	서창수	순천향대 창업지원단장		아산	
	유정규	前지역재단 상임이사	자문위원	서울	유임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자문위원	서울	유임
	전성환	충남문화진흥원장	前이사장	아산	
정책기획 위원 (11)	김종수	충발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정책위원	세종	유임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정책위원	대전	유임
	이수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정책위원	경기	유임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책위원	경기	유임
	임화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정책위원	대전	유임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책위원	서울	유임
	전충훈	지역활성화 LAP 마르텔로 랩장	정책위원	대구	유임
	조현경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책위원	서울	유임
	채종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위원	경기	유임
	최준규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위원	경기	유임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정책위원	충북	유임
인사위원회(5)	이윤기 박상우 강운정 박찬무 김민숙				

사회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안)

제3호 의안.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자 : 총회준비위원회 / 김민숙 총괄팀장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I. 2015년 사업계획

- ① 2015년 전망
- ② 2015년 사업기조 및 과제
 - 1. 2015년 사업기조 및 방향
 - 2. 2015년 부문별 사업과제
 - 3. 2015년 개인별 업무분장표

II. 2015년 예산안

- ① 수입부
 - 수입예산 편성기준
- ② 지출부
 - 지출예산 편성기준
 - 2015년 사무처 활동가 임금조정안

III. 아산지역자활센터

- ① 2015년 사업계획
 - 1. 2015년 사업기조 및 방향
 - 2. 2015년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 3. 2015년 개인별 업무분장표
- ② 2015년 예산안

I. 2015년 사업계획안

1 2015년 전망

성장의 둔화, 비정규직 불안전 고용, 가족복지 붕괴, 교육 불능, 계층화, 결혼 불능의 시대...

- 한국경제, 3%대 안팎의 경제성장을 전망? 민간소비 하락세 여전. 고용율은 증가하나 가계실질구매력은 계속 감소 추세(노년층, 파트타임 여성의 고용 증가로 1인당 실질임금 하락). LTV, 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빚 급증. 원화기준 수출의 감소로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의 증가율도 여전히 감소할 것임.
 - 친기업 정책남발로 인해 실물경제는 바닥상황에 직면할 것. 성장의 과실이 상위 10%에게 귀속되는 불평등 구조는 더 심화되고, 정부의 세수부족 16조원 확대 등 경기침체는 지속될 듯.
 - 세계경제체계의 주요골간 역시 여전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못 헤어나는 구조로 미국 경제만 살아날 듯. 산업 정책 부문도 유가 폭락과 장기침체, 내수 정체로 인해 산업구조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듯.
 - 노동시장 부문, 시간제 일자리 등 중고령층 여성의 고용은 증가되었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더 낮아지고 있으며 청년노동자와 실업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일 듯.
-
- 동북아정세, 한중일 관계는 정상회담 등의 노력 없이는 안보, 역사, 영토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 지속될 듯.
 - 남북관계 부문,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체제안정 및 내실화를 위한 유화-핵무력 정책 병행. 박근혜 정부는 종북문제 제기를 통한 정권유지, 갈등 해소를 빌미로 대북대화 제의 등 국면 전환용 감쪽쇼 예측 가능.
 -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정부의 대북, 한중일 관계에 대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새로운 변화는 어려울 듯.
-
- 박근혜 정부 취임 3년차, 민주주의 역행과 불통의 정치는 계속될 듯. 극우집단의 준동과 이로 인한 민-민 간의 사회적 갈등 유발을 통해 의료민영화,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전환할 듯.
 - 보수야당의 무력화, 진보정당 재편 움직임과 진보정당에 대한 존재감 상실. 조직노동운동의 보수화,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정권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가속할 듯.
 - 증세없는 복지 - 복지재정 안정? 결국 복지없는 노후. 정부재정의 부실을 지방정부로 전가하여 동반 부실 초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개악을 통해 연금의 하향평준화 노골화. 소수자인 무주택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택소유자 중심 정책을 계속 유지할 듯.
-
- 민선6기 공약(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화. 경제살리기 등 경제조직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정책은 계속 증가될 듯. 충남도는 사회적경제 시책 보다는 3농혁신의 정치적 실효성을 내세워 오히려 사회적경제 시책은 정체 또는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 시군별 중간지원조직 3농 시범사업이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등이 가시화되는 시기. 4년차에 접어든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에 대한 가시적 성과 요구 또는 내부 분열과 혼돈, 외부의 힐난과 비판 등이 예상됨.
 - (2015년 사회적경제 운동) 행정전달체계로서의 중간지원기관을 넘어 사회혁신형 활동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경제조직을 넘어 사회적 조직에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시군 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화에 대한 전망을 모색해야. 이를위해 노동/농민운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회적경제 운동 참여를 확장하고, 대학과 청년들의 조직화, 청소년-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상의 대중교육과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현장과 주민과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운동으로 진화 발전해야 지속가능할 듯.

2 2015년 사업기초 및 과제

1. 비전 · 사명 · 가치

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한다. 호혜와 협동에 기반한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화를 위해 돕고 거드는 건강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나아간다.
사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과 연대, 순환과 공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창조
가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노동, 지역, 호혜, 협동, 참여, 자치, 혁신, 공생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지역화(loc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 목표 : 지역에 기반한 1,000개의 풀뿌리조직 발굴과 지속가능성 확장 - 정성적 목표 : 사회적경제 주류화와 지역화를 통한 풀뿌리자치 실현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기책임과 혁신, 협업과 공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충남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회혁신형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사회적경제 조직간 상생거래 및 지역 네트워크 확장 사회적경제 운동의 지속가능성 확장과 자주적 생태계 조성

2. 2015년 사업기초 및 방향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현장성 강화 및 네트워크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달성
사업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로 진화와 발전, 민간 자조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화를 조망하자! 현장에서 반응하고 답을 찾아가는 현장과 주민과 지역 중심의 지원활동을 전개하자! 사회적경제 활동주체의 균형잡힌 역량강화와 집단지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내자! 지역내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청년조직과 다음 세대를 길러내자! 생활 속에서 마주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실제적인 장(場)을 넓혀가자! 당사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계층별·지역별 연대와 협동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사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으로의 혁신과 독자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내부사업 기능별 통합 팀 직제재편에 따른 조기 안착 및 유기적인 현장 지원활동 사회적경제 통합 DB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정책기획과 각종 지원사업 연계 공익적 가치와 경영이 가능한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소셜벤처, 청년캠프 등 차세대 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 판로 지원사업 시군별/업종별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주체역량 강화 및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 시군 사회적경제 통신원 및 시군 중간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정보망 구축사업 사회적경제 활동주체간 연대하고 실천하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포럼 조직화 사업

3. 2015년 부문별 사업과제

◆ 현장지원팀

심사 및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현장실사 및 실무심사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현장실사 및 실무심사 지원(전문인력 포함) • 우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선정 심사 지원 •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지원 • 마을기업 지정 및 재심사 : 현장실사 및 실무심사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 : 현장실사 • 협동조합 설립서류 검토 지원
상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내방상담(매주 금요일) : 2개 거점별 진행(아산, 부여) • 통합 설명회(월1회, 마지막주 금요일) : 2개 거점별 진행(아산, 부여) •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모 니 터 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모니터링(주2회, 회/수)
컨 설 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회적기업 인사노무, 세무회계 컨설팅 • 인증 사회적기업 온라인 사업보고서 설명회(시스템 안내 및 작성요령 교육) •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회계세무, 노무인사 분야) •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 및 세무회계 컨설팅 • 전문가 연계 컨설팅 • 경영자문단 구성(자원연계팀 연계) • 협동조합 경영공시 지원

◆ 교육지원팀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회계 교육 • 인사노무 교육 • 경영/마케팅 교육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 / 거점별 설명회(현장지원팀 연계)
조직별 기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오리엔테이션 • 마을기업 오리엔테이션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CB 설립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 입문(4H, 5인이상/기업당) - 기본(10H) - 심화(10H, 3개조/15개소) • 신규 모델 발굴 육성(인큐베이팅 과정) : 청년 중심, 유통명/도시형 마을기업 발굴 육성 • 찾아가는 전문가 파견 설명회 : 복지관, 유관기관 등 지역강사 파견
아 카 데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보노 강사 양성과정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 획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

◆ 자원연계팀

자 원 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보노 현황 및 유관기관의 자원조사를 통한 공동사업 기반 조성 • 1사 1촌 지원
네 트 워 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간담회) : 미구축 시군 조직화, 기구축 시군 활성화 • 당사자조직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 마을기업협의회 재진, 협동조합 협의체 구성 •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모임 정례화 및 협업사업 추진
거 버 년 스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신문 발행(년4회, 16면/1,000부) • 웹진 제작 및 발행 • 충남 사회적경제 사업체 지도 발행 : 시군별 조직현황 • 사회적기업협의회 인명록(수집) 제작 • 사회적경제 사업체 홍보를 위한 탁상 달력(또는 다이어리) 제작 • 모범사례 수집 분석을 통한 충남형 사회적경제 성공사례 전파 • 언론보도 및 SNS를 활용한 기관 홍보 및 추진사업 홍보 확대 : 통합 홍보일지 작성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오즈메일러 등
판 로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DB 구축 지원 • 따숨상회를 통한 판로지원사업(월2회 연석회의) : 판로지원센터, 활성화네트워크 - 6개 권역 따숨장터 개설(상설화) : 사업타당성 검토후 지역축제 지원형태로 전환 가능 - 따숨상회 전년 대비 매출 150% 달성 목표 • 기존 매장내 사회적경제 코너(숨앤숨) 입점 지원 • 설/추석 명절 판매 기획전 • 마을기업 전국박람회 •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연대사업 -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장 개척을 위한 조례 제.개정 지원사업 - 내부시장 개척 및 외부 판로망 확보 지원 • 융합상품 개발 : 소비자 유인상품 개발 • 충남 사회적경제 사업체를 위한 유통법인 설립 방안 모색(중장기계획)

◆ 기반강화팀

조 사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자료의 정기적인 취합 및 up-date - 모니터링 서식지 개발, access 프로그램을 통한 DB 연동, 통계프로그램 셋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등 창업팀 DB 구축 지원 • 교육 및 추진사업에 대한 참여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설문지 설계, 개발, 교육참여 및 수료율 점검표 설계, 통계프로그램 셋팅
기 획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사회적경제 상품/제품/서비스 DB 구축 관리 내실화

정책연구/제안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정책기획 월레포럼(월1회, 정책기획위) : 정책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창업지원 (육성사업/소셜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행(컨소시움) : 충남 15개팀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 창업, 멘토링, 공통프로그램, 교육 및 컨설팅,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홍보 지원 • 2015소셜벤처 지원 •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청년 소셜벤처 창업과정 지원

◆ 총괄기획

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과 충남도민이 함께하는 활동양식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체계 구축 운영 • 사회혁신위원회 구성 및 각 분야별 소모임 활성화 → 충남사회경제혁신포럼 결성 준비 • 사무처 내 평간사협의회 구성, 공제회 구성 등 • 조직의 미래전략 구상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 조직 분화(전문화) 또는 네트워킹 전략
회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확대운동(200명 목표) 기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의 생애주기 리플렛 제작, 회원/후원자에 대한 피드백 등 • 회원참여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회원관리 및 보고 안정화, 회계 공시 등 • 시스템 구축 및 실무매뉴얼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주1회) 및 중간지도력 확장 : 외부 전문강사 특강 등 • 조직운영 재원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모금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자조기금의 모금과 배분 - 공유경제, 지역화폐, 금융공동체 등 가능한 대안경제 활동 활성화 • 시군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한 연대 및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농혁신, 서울시 도농상생사업, 충남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등 • 충남 사회적경제 운동과 사회혁신가 플랫폼 구축 운영(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취합과 공유(홈페이지 리뉴얼) - 청년 실업(알바노조 포함) 또는 대학 생협 등 주체화/조직화 실험

Ⅱ. 2015년 예산안

1 수입부

계정		항목	2014 결산	2015 예산	산출기준
사 수 업 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10,300,000	24,000,000	CMS회원배가운동, 200명 목표
	후원금수입	일반후원금	6,600,000	21,000,000	후원회 구성 또는 후원의밤 진행
		지정후원금	7,291,000	30,000,000	소액모금, 소셜펀딩 등
	목적사업수입	기획사업수입	57,598,414	45,000,000	(감액) 추진에 따른 특별후원금
		강의외래수입	15,345,113	5,000,000	(감액) 외부강의수입 입금비율 조정
		기타수입	993,580	0	
	수익사업수입	용역사업수입	105,670,000	107,500,000	기초컨설팅 업체수 증가, 기타 용역
		광고협찬수입	0	5,000,000	소식지 제작, 명함광고 50곳 수주
소계			203,798,108	237,500,000	전년 대비 16.5% 증액
사업외 수입	사업외수입	이자수익	127,735	0	
		접수익	203,305	0	
	소계			331,040	0
일반회계 수입합계			204,129,148	237,500,000	전년 대비 16.3% 증액
보조금 수입	보조금수입	보조금	1,131,700,100	1,280,684,900	
		예금이자	198,325	0	
특별회계 수입합계			1,131,898,425	1,280,684,900	전년 대비 13.1% 증액
당해년도 수입합계 (a)			1,336,027,573	1,518,184,900	전년 대비 13.6% 증액

◆ 수입예산 편성기준

전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인 CMS회원배가운동, 후원금/모금 기획사업 추진 → 일반회계 비중의 점진적 상승. 보조금 외에 최소한의 내부재원 확보를 통해 최소 2인 정도의 자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반회계 2014년 대비 16.3% 증액) -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증액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다만 수익이 발생하는 컨설팅 사업이나 연구용역, 민간재단의 공모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수주할 계획임. (특별회계 2014년 대비 13.1% 증액)
외부용역 수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 기초컨설팅(25곳, 82,500,000) - 시군비 : 아산시(15,000,000) - 출연기관 또는 재단 : 10,000,000
보조사업 수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 사회적기업(180,000,000), 협동조합(101,000,000), 육성사업(479,684,900) - 국/도비 매칭 : 마을기업(200,000,000), 설립전교육(20,000,000), 지역특화사업(100,000,000), - 도비 : 협동조합현장지원사업(100,000,000), 아카데미(50,000,000), 네트워크(20,000,000) - 시군비 : 부여상권활성화(10,000,000), 기타시군(10,000,000) - 출연기관 또는 재단 : 평생교육진흥원(10,000,000),

2 지출부

계정		항목	2014 결산	2015 예산	산출기준
사 무 운영비	인건비	급여	43,058,410	30,000,000	2,500,000원*12월
		사회보험료	14,980,348	6,360,000	530,000원*12월
		상여금	0	4,800,000	300,000원*16명
		퇴직급여	6,306,150	30,079,440	2,506,620원(16명)*12월
	소계		64,344,908	71,239,440	전년 대비 10.7% 증액
	운영비	복리후생비	2,163,800	2,000,000	결산 대비 소액 감액
		여비교통비	3,186,333	3,000,000	결산 대비 소액 감액
		통신비	210,380	200,000	결산 대비 소액 감액
		수도광열비	852,000	852,000	전기세 71,000원*12월
		지급임차료	4,323,120	4,000,000	사업비 대체집행 외 불가항목 부담
		수선비	3,330,000	1,000,000	사무공간 환경미화 비용
		보험료	5,602,760	6,000,000	보조사업비 증액에 대한 증가
		도서인쇄비	1,464,880	300,000	사업비 대체집행 외 불가항목 부담
		소모품비	900,670	500,000	사업비 대체집행 외 불가항목 부담
		비품구입비	8,777,300	3,000,000	노후 PC, 모니터 교체비용
		차량유지비	0	3,600,000	차량리스 및 관리 300,000원*12월
		지급수수료	1,137,000	1,000,000	결산 대비 소액 감액
잡비	322,910	100,000	결산 대비 소액 감액		
소계		32,271,153	25,552,000	전년 대비 20.8% 감액	
사업비	목적사업비	지정사업비	0	10,000,000	차량구입(400), 청년활동, 소액대출
		기획사업비	0	10,000,000	후원회(일일호프) 등
		조직사업비	7,028,890	5,000,000	결산 대비 소액 감액
		교육사업비	3,145,900	3,000,000	결산 대비 소액 감액
		홍보사업비	102,000	2,000,000	홈페이지 리뉴얼, 리플렛 제작 등
		연대사업비	1,720,000	2,000,000	지역연대 및 네트워크망 확장
		업무추진비	0	1,200,000	100,000원*12월
	소계		11,996,790	33,200,000	전년 대비 176.7% 증액
수익사업비	용역사업비	72,280,690	96,750,000	용역사업 총수입액의 90%	
	사업손실비	8,182,780	1,000,000	정산후 환급 발생분	
소계		80,463,470	97,750,000	전년 대비 21.5% 증액	
사업외 비용	사업외비용	이자비용	0	0	
		잡비용	250,240	0	
	소계		250,240	0	
소계 (예비비)		0	9,758,560	예비비	
일반회계 지출합계			189,326,561	237,500,000	전년 대비 25.4% 증액
보조금 지출	보조사업비	인건비	*	*	추정금액 426,000,000원
		경비	*	*	
		사업추진비	*	*	
		일반관리비	*	*	
소계		1,049,317,577	1,280,684,900	-	
소계 (국고반납)		36,612,577	-	-	
소계 (계속사업)		45,968,271	-	-	
특별회계 지출합계			1,131,898,425	1,280,684,900	전년 대비 13.1% 증액
당해년도 지출합계 (b)			1,321,224,986	1,518,184,900	전년 대비 14.9% 증액

당기수지 차액 ① a-b		14,802,587	0	
기 타	미지급금의 발생 (-)	0	-	
	미지급금의 결제	24,896,453	-	
	예수금 (-)	0	-	
	예수금의 결제	0	-	
	단기차입금 (-)	-5,0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5,000,000	-	
	장기차입금 (-)	-10,00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0	10,000,000	
	퇴직급여충당금의 발생 (-)	-26,266,900	-30,079,440	
	퇴직급여적립금	43,538,897	30,079,440	
	퇴직급여적립금의 상환	6,306,150	-	
임차보증금	0	-		
임차보증금의 처분 (-)	0	-		
소계 ②	45,765,600	10,000,000		
전기 이월금 ③		-73,053,503	-12,485,316	
차기 이월금 ①+②+③		-12,485,316	-2,485,316	
기 금	기금의 적립	7,291,000	-	
	기금의 처분 (-)	0	-	
	기금의 환수	0	-	
	소계	7,291,000	-	

◆ 지출예산 편성기준

- 전체계획
-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여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 전년 대비 14.9% 증액(일반회계 25.4%, 특별회계 13.1% 증액)
 - 운영비는 비용절감과 보조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년 대비 소액 감액하였으나, 사업비는 단체의 설립취지와 재정자립을 위해 목적사업비를 크게 증액하였음.

◆ 2015년도 사무처 활동가 임금조정안 (세전)

이름	직책	기본급	식대지원	경력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생활지원	2015급여	2014급여	증감액
박상우	처장	1,400,000	100,000	176,000	60,000	600,000	125,000	-261,000	2,200,000	2,401,000	-201,000
김민숙	총괄	1,400,000	100,000	89,000	60,000	500,000	170,000	-219,000	2,100,000	2,289,000	-189,000
이혁수	팀장	1,400,000	100,000	62,000	30,000	400,000	170,000	78,000	2,240,000	2,202,000	38,000
박정현	팀장	1,400,000	100,000	84,000	30,000	400,000	170,000	56,000	2,240,000	2,204,000	36,000
박영식	팀장	1,400,000	100,000	101,000	0	300,000	135,000	4,000	2,040,000	1,976,000	64,000
신재학	팀장	1,400,000	100,000	88,000	0	300,000	35,000	37,000	1,960,000	1,880,000	80,000
이종현	주임	1,400,000	100,000	57,000	0	100,000	95,000	48,000	1,800,000	1,892,000	-92,000
황은하	주임	1,400,000	100,000	75,000	60,000	100,000	35,000	30,000	1,800,000	1,775,000	25,000
이제빈	주임	1,400,000	100,000	70,000	30,000	100,000	75,000	15,000	1,790,000	1,715,000	75,000
박용원	간사	1,400,000	100,000	61,000	30,000	50,000	75,000	64,000	1,780,000	1,706,000	74,000
우종한	간사	1,400,000	100,000	65,000	0	50,000	20,000	95,000	1,730,000	1,665,000	65,000
방명조	간사	1,400,000	100,000	35,000	0	50,000	85,000	50,000	1,720,000	1,660,000	60,000
최승호	간사	1,400,000	100,000	29,000	0	50,000	50,000	51,000	1,680,000	1,590,000	90,000
박미란	간사	1,400,000	100,000	34,000	60,000	50,000	85,000	-129,000	1,600,000	1,519,000	81,000
장은희	간사	1,400,000	100,000					300,000	1,800,000	-	-
김지영	간사	1,400,000	100,000					100,000	1,600,000	-	-
유미나	간사	1,400,000	100,000					100,000	1,600,000	-	-

Ⅲ. 아산지역자활센터

1 2015년 사업계획안

1. 2015년 사업기조 및 방향

2.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구분	사업 유형	세부사업명	참여 인원	사업내용	기대효과
자 활 근 로 사 업	시장 진입 형	누룽지사업	6	- 누룽지 제조 및 판매 - 식자재 및 물품관리 - 홍보, 영업(마케팅) 관리	실업빈곤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단 참여로 책임감/공동체의식 함양, 주인 의식 고취로 공동체 발굴
		식품건조사업	8	- 제품개발 및 생산 - 판로개척 - 안전한 먹거리사업 정착화	천연재료 안전먹거리 제공, 일자리창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익활동
		외식사업	6	- 잔치/비빔국수 등 안전한 먹거리 - 영농사업단 상호보완 운영	다양한 식단 조리기술 습득, 지속적인 매출신장과 성공적인 창업 도모
	인턴 도우 미형	자활도우미사업	1	- 자활근로사업 업무보조 - 자활근로참여관리 및 가구방문 - 사업단별 참여자 근무실태관리	사업실적 향상에 따라 인적관리시스템 필요, 근로의욕이 높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지역주민과의 상호지원체계 구축, 저소득층의 사회통합 실현
		시설과견사업 (복지시설 파견도우미)	5	- 참여자 자활의욕 향상 - 기관 업무의 질적 향상 도모 - 소외계층여성 기회 제공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파견시설의 효과적인 업무지원, 지역사회 사회적인 자리 창출, 참여자 업무능력 향상
	Gate Way	게이트웨이	6	- 초기상담으로 자발적 의사결정 - 개별진로 모색 -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훈련	개별 경로설정으로 자활 목표 설정, 주민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진행, 적합한 자활지원체계 마련
	사회 서비 스형	주거복지사업	6	- 건설 생산공동체 자립 조성 - 지역 주거환경 개선	건설업을 희망하는 참여자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병원간병사업	7	- 간병인 소양교육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간병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 지역의료 협조를 통한 의료지원체계 구축
		영농사업	10	- 영농기술 습득 - 농작물 안전한 먹거리 재배 생산	저소득층 자활의욕고취, 삶의질 향상, 안정된 일자리창출로 복지사회 구현
		바리스타사업	6	- 바리스타 자격과정 취득 - 바리스타 전문가 양성 - 타사업단 생산품 연계 판매	실업빈곤 계층의 일자리창출, 사업단 참여로 책임감/공동체의식 함양, 주인 의식 고취

	시범	토탈서비스	6	- 한땀한땀 바느질 사업 - 스텝프 이야기 사업 - 예쁜 손글씨 사업	참여자 근로의욕 향상/일자리창출, 공동체의식 확보로 자활기업 기초 마련
		소계	67		※ 2015예산 : 867,000,000원
현물급여			-	-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 자활 참여주민 일자리 제공 - 자격증 취득 및 기술력 향상	자활참여자 사회적일자리 마련,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자활기업의 기반 조성
센터운영			6	- 지역자활센터 운영 / 처우개선비	※ 2015예산 : 215,900,000원
민간위탁사업			1		※ 2015예산 : 50,000,000원
바우처사업	장애활동지원사업		661	- 근로참여관리 및 가구방문 - 사업단별 참여자 근무실태관리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지역주민 상호 지원체계 구축, 저소득층사회통합실현
	노인돌봄사업		481	- 소외계층노인의 노후생활보장 - 사회서비스를 통한 고용증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가사간병사업		107	- 장애인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소외계층의 안정적 생활지원,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
	소계		1,249		※ 2015예산 : 1,059,922

2 2015년 예산안

1. 세입

(단위 : 천원)

항목	2014 결산	2015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 활 사 업		867,000	844,730	86,700	86,700
현 물 급 여					
운 영 비		215,900	151,130	32,385	32,385
민간위탁사업		50,000			50,000
처우개선비					
총계		1,132,900	995,860	119,085	169,085

2. 세출

항목		2014 결산	2015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 활 사 업	자활사업비	인건비	664,266			
		사업비	202,734			
	소계		867,000	844,730	86,700	86,700
현 물 급 여			-			
운 영 비	인건비	급여	134,589			
		제수당	17,545			
		사회보험료	13,227			
		퇴직적립금	12,528			
	업무추진비		8,500			
	운영비	여비	6,535			
		수용비	6,686			
		공공요금	2,150			
		제세공과금	8,420			
		차량비	2,400			
		기타운영비	1,420			
	시설비	자산취득비	2,800			
		시설장비유지	400			
소계		215,900	151,130	32,385	32,385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급여	21,096			
		제수당	1,337			
		사회보험료	2,109			
		퇴직적립금	1,758			
	운영비	수용비	900			
시설비	자산취득비	900				
처우개선비			50,000		50,000	
총계		1,132,900	995,860	119,085	169,085	

◆ 세입·세출예산 산출내역

자활근로사업	세입	세출		비고 (인건비:사업비)
		인건비	사업비	
누룽지사업	102,360	71,653	30,707	6명 (7:3)
식품건조사업	135,220	94,660	40,560	8명 (7:3)
외식사업	99,920	69,947	29,973	6명 (7:3)
자활도우미사업	13,420	12,077	1,343	1명 (9:1)
복지시설파견사업	60,600	54,548	6,052	5명 (9:1)
게이트웨이사업	70,671	49,950	20,721	7명 (7:3)
주거복지사업	62,450	49,960	12,490	6명 (8:2)
영농사업	137,040	109,635	27,405	10명 (8:2)
바리스타사업	54,019	43,215	10,804	6명 (8:2)
병원간병사업	83,502	75,162	8,340	7명 (9:1)
토탈사업	47,798	33,459	14,339	7명 (7:3)
계	867,000	664,266	202,734	

제4호 의안.

기 타 안 건

주문사항

기타 논의해야 할 안건이 있으면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민선6기 사회적경제 전략보고서 (도지사 보고자료)



특별위원의 도지사 보고자료

민선 6기 사회적경제 전략보고



충남사회적경제특별위원의



민선5기 사회적경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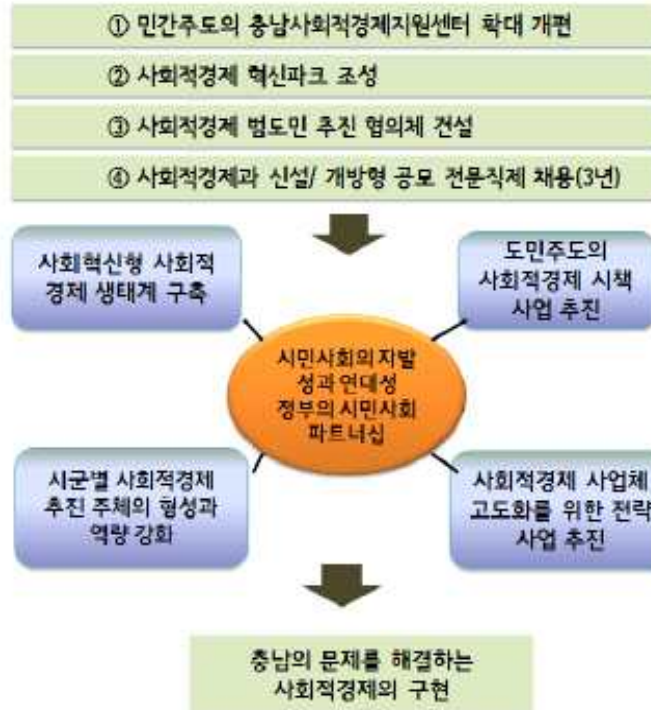


민선6기 사회적경제 방향

충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의 구현

1. 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경제 시책전달에서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
2. 유사사업 통합 시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시책협의회의 구성과 전담과 신설
3. 도민주도형 사회적경제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4. 시군별 사회적경제 추진 주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
5. 사회적경제사업체 고도화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

민선6기 사회적경제 4대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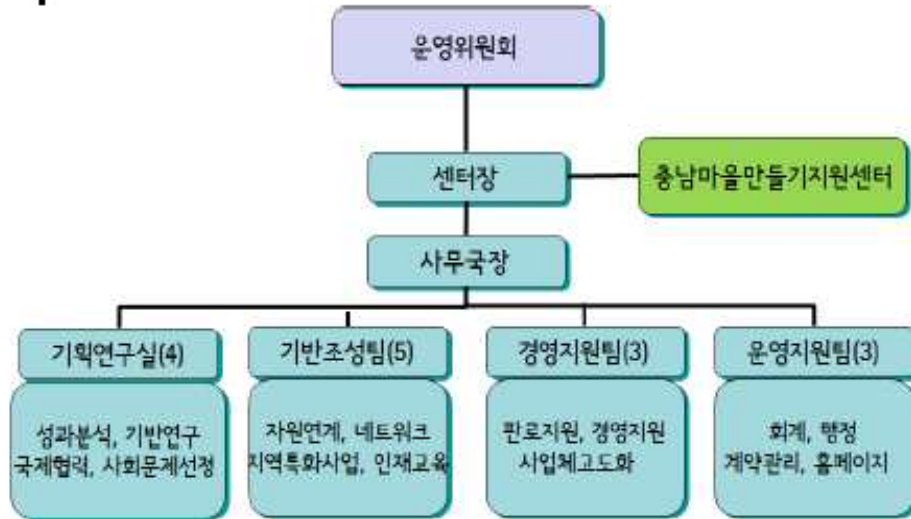
● ● ● | 민간주도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대개편

- 사회적경제 주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사업 개발, 제공
- 다양한 사회주체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자원연계 및 공동 추진
- 종합적인 기획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검증하여 확산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부설기관으로 두어 사회적경제 영역과 시너지 효과 창출

● ● ● | 확대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



확대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자원 보유체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형성
- 사회적경제 내외부 자원, 정보, 사업기회 등이 공유되고 순환되는 허브로서의 기능
- 사회적 투자자, 윤리적 소비자들과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교류 촉진
-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을 12억 원을 들여 추진
- 충남의 경우 기존의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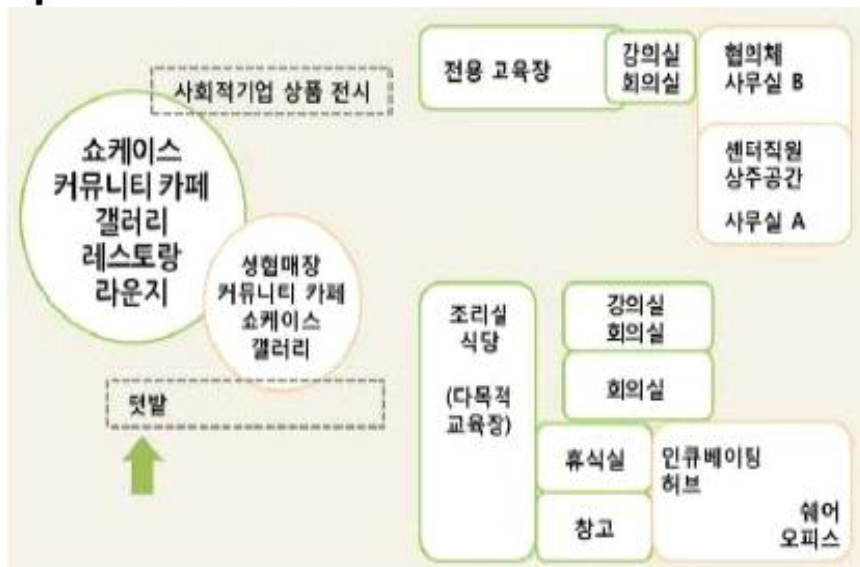
*서울 사회적경제 협동허브 (안)



시민 접근성 제고 & 네트워크 규모화

자치구 기반 신규 진입 주체	광역 지원기관 배틀 주체	기타 개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카데미, 소모임, 공모전, 인큐베이팅 ·마을기업 팀워크숍, 의제발굴교육 ·지역특화사업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합, 청년혁신활동가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청년일자리허브, 이모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교육, 실업 상담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 ·협동조합상담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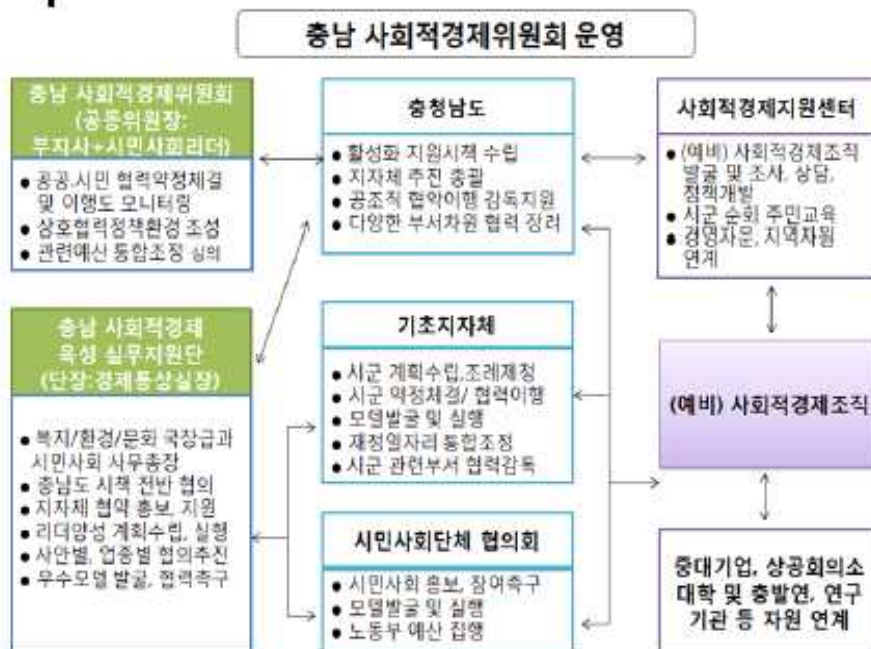
*서울 사회적경제 협동허브 (안)



사회적경제 범도민 추진협의체 건설

- 사회적경제 범도민 추진협의체를 통해 개별 부처 사업들과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 연결 가능
- 광역 사회적경제 협의체는 광역 정책조정협의회, 광역시도 관련 과, 중간지원조직 등을 포함하는 개방형 거버넌스 형태
- 광역단위에서 중앙부처 사업들에 대한 조율(정책조정협의회), 감독 및 위탁(광역시도 관련 과), 집행(중간 지원조직) 역할 수행
- 사회적경제 지원의 효율성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대표 민관협력조직의 육성을 통해 지역별로 의사소통의 단위를 단일화하고 대표성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 범도민 추진협의체(안)



사회적경제과 신설/ 개방형 공모 전문직제 채용

〈사회적경제과 신설〉

- 사회적경제정책 컨트롤타워/조정기관 신설 필요
- 광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사회혁신 등 다양한 일들을 합쳐 융복합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내 사회적경제과를 운영하고 총 18명의 인원이 협동조합정책팀, 사회적기업육성팀, 기반조성팀, 마을기업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업무 중임

〈개방형 공모 전문직제 채용(3년)〉

-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할 공무원 배치가 필수임. 이를 위해서는 내외부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게 하여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적경제 영역 확장을 통해.....



민선6기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전략보고서

충남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1 총론

1. 민선5기 사회적경제 성과

□ 사회적경제 시책 추진 기본문제의 점진적 해소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거부감을 다양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
- 자조성, 연대성, 주체성을 훼손하는 정부 주도 사회적경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자적 인식 형성
- 일부 사회적경제 사업자들의 폐쇄성과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당사자 참여, 협력형 정책 추진

□ 사회적경제 정책개념의 도입과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 제정(2013) : 전국 최초 통합 지원 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를 자치법규로 도입
-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수립
- 기획관리실 지속발전담당관 산하 지속발전담당팀(사회적경제정책기획, 협동조합), 사회적경제팀(사회적경제업무총괄, 마을기업사회적기업담당) 설치 운영

□ 사회적경제 독립전달체계 구축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 충남도정책자문위원회 사회적경제추진기획단,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운영
- 사회적경제 전문 지원 기관설립 운영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충남발전연구원 소속)
- 중간지원 조직으로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마을기업연합회 등의 설립과 운영 지원
- 충남협동조합현장지원센터 지정 지원

□ 사회적경제 주체의 확대와 충남형 시책 추진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확산(316개소)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사업 지속 추진 : 4개기관 15개 과정으로 확대, 연 3천명 교육
- 사회적경제 기업 자립기반 제고 : 전시판매전, 우선구매(92억원) 및 판매지원센터지정운영(사회적기업협의회 수탁, 9천만 원)

-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조성(천안)
- 지역별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8개시군 8개업종)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언론캠페인 등)
- 충남소셜벤처 경진대회 개최
- 사회적경제 기업 부서담당 지원제(시범)



〈그림 42〉 민선 5기 사회적경제 성과

2. 민선5기 사회적경제 사업의 한계

- 중앙정부 시책 전달을 중심으로 충남형 사업을 부차적으로 결합
 - 중앙정부가 정의한 재정일자리형 사업이 주된 형태로 되어 충남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간비즈니스로 지원 육성 미흡
 - 공동생산, 사회적경제의 주류화-사회적경제형 지역경제정책 추진, 민간주도형 네트워크 전략 등 기본 전략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실천 미흡
 - 중앙정부의 시책의 전달 중심이며 충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충남형 사업 중심성 미흡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모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기업의 분산 각개 약진
 - 주된 사회적경제 기업 형태인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지원 상담으로 제한
- 충남 자원의 통합적 활용 미흡
 - 유관 시책의 통합 조정 및 집행 단위 부재
 - 농정국 : 희망마을만들기, 두레기업
 - 안전행정국 : 충남형자치모델, 도시형마을만들기, 공공기관우선구매(회계과)

기획관리실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경제통상실 :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지원

복지보건국 :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작업장, 시니어클럽

지원관련 유관기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자원봉사센터, 충남평생학습진흥원

- 사회적경제의 시군단위 추진역량 개발 미흡
- 계층별 세대별 사회문제에 대한 계통적 접근 전략 및 운영 미흡
- 충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사업의 개발 운용 미흡
- 예) 폐촌위기 고령마을형 사회적경제조직, 상수도보급, 교육문제 지원 등

○ 사업체의 고도화와 자립적 운영 지원 미흡: 정부주도형사업으로 주체의 주도성 결핍

- 정부 재정의존 심화-사회적경제 조직간의 경쟁 및 전달체계로의 편입 경쟁 발생
- 사회적경제 기업의 주체적 발전전략 미흡, 일부에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조직의 보존논리가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유자산의 조성 과 공동기금 조성 미흡
- 개별 사업체의 고도화를 위한 업종, 지역별 네트워크와 공동거래 활성화 미흡

3. 민선6기 사회적경제 방향

□ 기본관점

-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에 기여함
 -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연대성, 정부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 좋은 시민사회를 통해 좋은 정부와 시장의 문제의 극복을 지향
-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과 역량, 주체의 활용과 참여
-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확립

□ 민선 6기 사회적경제 방향- 충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의 구현

- 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경제 시책전달에서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생산 단위로서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발굴 지원 중심으로 전환
 - 지역사회 결핍과 문제로 인한 욕구당사자가 직접참여하는 현장대안실험실(Living Lab)의 운영을 통한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 집중 발굴

○ 유사사업 통합 시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시책협의회의 구성과 전담과 신설

- 마을공동체 개발에서 사회적기업 지원까지 일관지원 체계 수립
-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유사사업의 총괄 기획 조정을 위해 사회적경제과 신설 운영

○ 도민주도형 사회적경제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 지역화폐를 비롯한 공유경제형 사업 모델의 개발과 확산 추진
- 지역의 문제를 상호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평생학습동아리 3만개 발굴 지원
- 충남사회적경제범도민실천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형성 및 범도민 참여운동 추진

○ 시군별 사회적경제 추진 주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

- 시군별 불균등 정책의지 및 정책수준 상향 평준화를 통한 지역별 도민의 사회적경제 접근 차별의 개선
- 시군별 특화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 시군별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 공공분야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특화사업단 구성 운영 지원을 통한 시군별 사회적경제지원체제 구축 지원

○ 사회적경제사업체 고도화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대개편(충발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현장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판매지원센터 등의 통합 신설)
-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전담 금융 투자기관 설립 지원(사회적경제신협-충남사회투자기금 등)
- 공공조달의 확충위한 사회적가치조달제도의 모색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공공조달 목표제 상향
-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고도화 지원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겪고 있는 영세 자본, 낮은 기술, 일천 경영마케팅 역량 문제를 해소 위해 유형 수준별 사회적경제 사업체간의 협업화 지원, 충남도의 자원과 시책과 결합 지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의 연구 및 보급 지원

4. 민선 6기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요구사항

① 민간주도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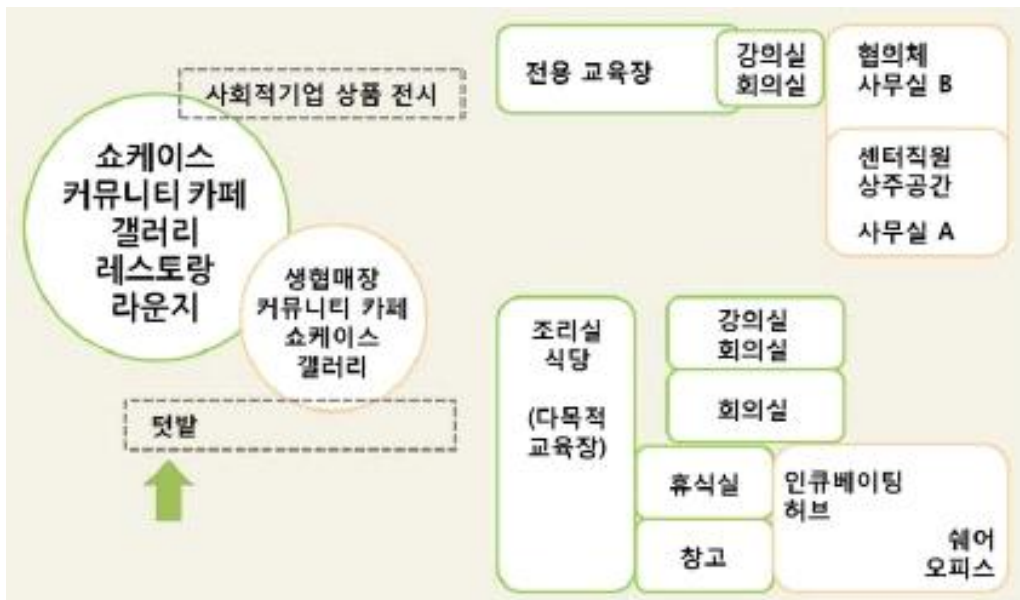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확산: 경쟁과 이윤추구 중심에서 사람과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전환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시민사회의 자조역량 강화 및 섹터 간 협동 제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로 지역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 충남도민의 사회통합, 지역고용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핵심 해법으로 사회적경제를 확장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영역과 시너지 효과 창출
(구체적 실현방안은 3장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안) 참조)

②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자원 보유체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형성
- 사회적경제 내외부 자원·정보·사업기회 등이 공유되고 순환되는 허브로서의 기능
- 사회적 투자자, 윤리적 소비자들과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교류 촉진
- 참고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은 12억 원을 들여 아래와 같이 추진됨
- 충남의 경우 기존의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재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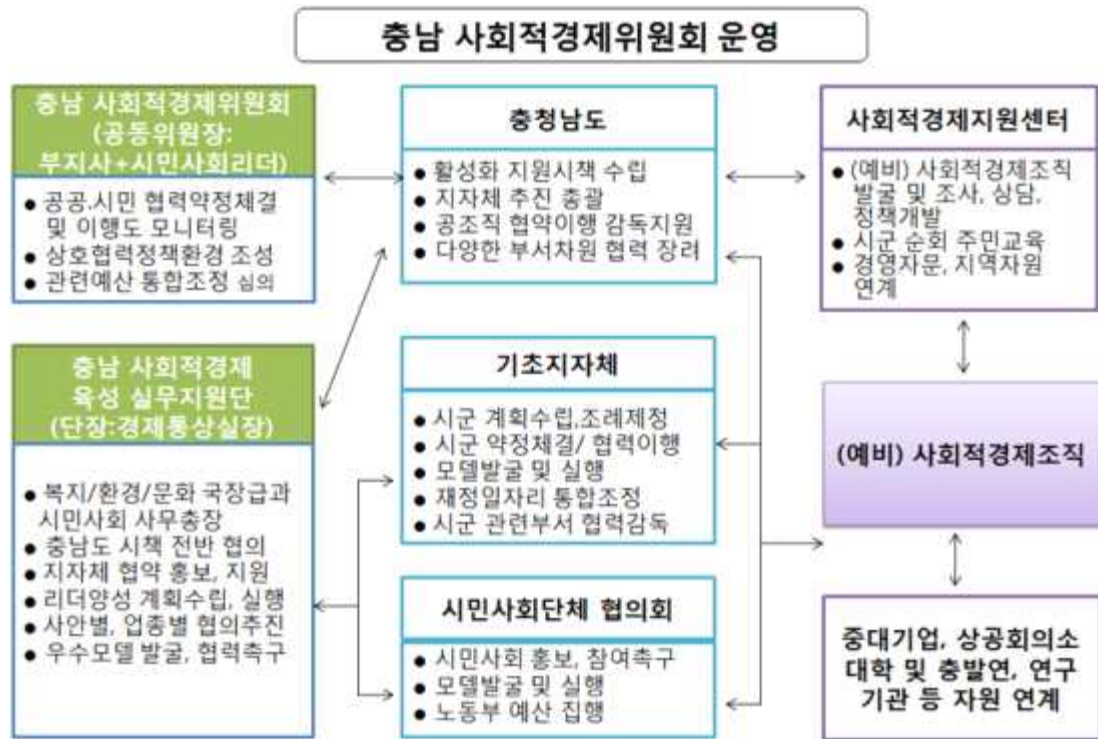


<그림 43> 서울시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구축 계획(안)

③ 사회적경제 범도민 추진협의체 건설

- 사회적경제 범도민 추진협의체를 통해 개별 부처 사업들과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 연결 가능
- 광역 사회적경제 협의체는 광역 정책조정협의회, 광역시도 관련 과, 중간지원조직 등을 포함하는 개방형 거버넌스 형태
- 광역단위에서 중앙부처 사업들에 대한 조율(정책조정협의회), 감독 및 위탁(광역시도 관련 과), 집행(중간 지원조직) 역할 수행
- 사회적경제 지원의 효율성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대표 민관협력조직의 육성을 통해 지역별로 의사소통의 단위를 단일화하고 대표성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거버넌

스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음



<그림 44> 사회적경제 범도민 추진협의체 구성(안)

④ 사회적경제과 신설/ 개방형 공모 전문직제 채용(3년)

○ 사회적경제과 신설

-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인 법·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전체 사회적경제정책 컨트롤타워/조정 기관 신설이 필요함
- 사업의 효과는 정책, 예산, 집행 등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앙단위에서 합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중앙 단위에서 업무 현황과 부처 간 업무 협의를 통해 광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과 하나만 합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망쳐놓으면 좋을 것임.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과로 붙여 핵심사항은 한 곳에서만 일을 추진해야 함. 실제로 융복합을 추진한다고 해도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업무를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유사업무 한 곳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위 융복합이라는 통합이 필요함. 네트워크, 파트너십, 거버넌스 모두 융복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물리적 통합 뿐 아니라 관련 부서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내 사회적경제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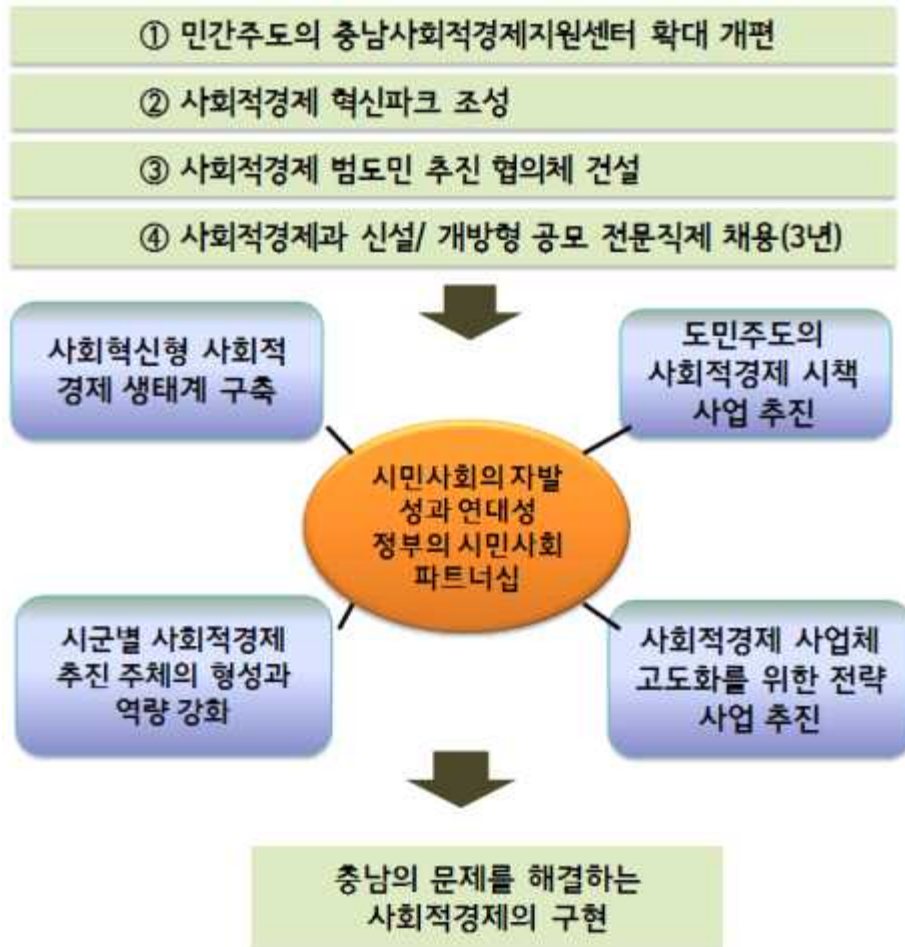
〈표 1〉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조직 및 인력

구분	인력	업무
협동조합 정책팀	7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사회적경제 민간협의회 협력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총괄,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협동조합 관련 제도.법률 정비 등, 협동조합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관련 홍보, 지역단위(자치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통계 및 신고수리 현황 관리 등
사회적기업 육성팀	5명	우수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및 모델확산,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컨설팅, 경영평가 등),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도 감독 및 관리 등
기반조성팀	3명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공공구매촉진 및 실적관리,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 업무,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허브조성, 사회적기업 홍보, 마케팅, 박람회 등
마을기업팀	3명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 총괄,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대상 선정 및 지원, 컨설팅업무, 홍보 및 판로지원, 마을기업 선정 업무

○ 개방형 공모 전문직제 채용(3년)

-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 배치가 매우 필요함. 이를 위해 개방형 공모 전문직제에 이 영역에 도전하고 싶은 도의 공무원들 혹은 민간영역의 뛰어난 전문가들을 채용(3년)하여 이들이 자기 권한과 책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함

○ 위의 논의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그림 45〉 민선 6기 사회적경제 전략 추진 계획

② 충남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집행단위 확대 개편 필요성

1.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중앙정부 주도사업 추진은 일상적 업무의 반복으로 충남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산 및 질적 고도화로 진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일년에 4회의 사회적기업 심사 및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현재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여력이 없는 상황임
- 현재 충남도는 국비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 도비 자체로 진행되는 시책사업 예산이 15억원 가량 존재
- 이러한 시책사업들은 비전과 목표를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는 산발적,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효과성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임
- 또한 시책사업별 공모, 선정절차의 문제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는 매년 추진 시기가 하반기에 시작되는

면이 있어 이후 시간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에 급급한 모습을 보임. 이는 민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숙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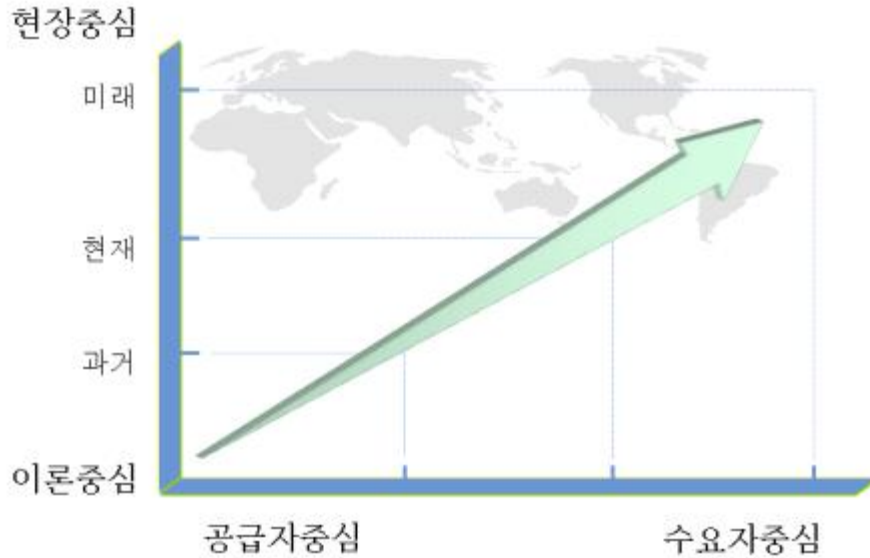
- 이러한 배경 하에 충남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괄사업비 집행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조직을 설립(확대 개편)하여 사업추진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함

<표 102> 충남도 사회적경제 시책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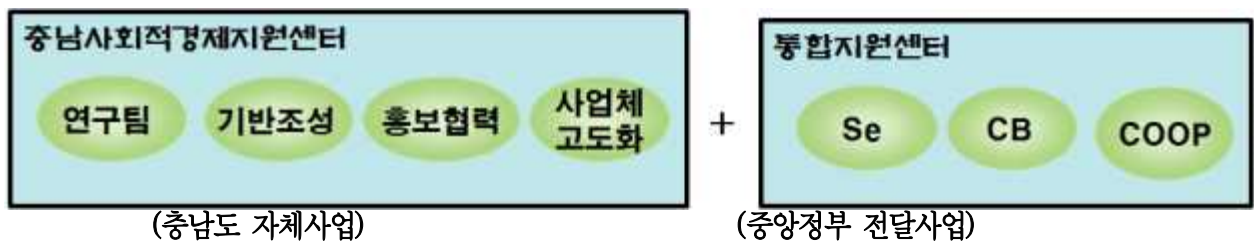
사업	예산성격1	예산성격2	집행 시기	예산내 용	예산액(단위:천원)		
					총액	국광기분	시도
지역(광역)특화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국도	285,000	199,500	85,500
일자리창출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도	8,429,580	7,663,300	766,280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도	1,857,177	1,645,600	211,577
사회적경제지원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체	50,000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출연금	출연금	3월 (절반)	자체	400,000		
우수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6월	자체	300,000		
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월	자체	120,000		
협동조합현장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월 계약	자체	300,000		
사회적경제오피스업무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미집행	자체	50,000		
사회적경제판로지원 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월 계약	자체	70,000		
사회적경제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체	50,000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직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미집행	자체	60,000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월경	자체	50,000		
마을기업설립지원프로그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국도	30,000	15,000	15,000
마을기업컨설팅사업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국도	150,000	75,000	75,000
마을기업육성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도	771,030	593,100	177,930

2.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분리 설립(안)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분리 설립은 그동안 이론중심과 공급자중심의 측면이 강했던 사회적경제를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충남도 자체사업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새로 설립, 위탁)에서 맡고 중앙정부 전달사업, 즉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증심사, 컨설팅 등을 통합지원센터가 맡는 구조를 상정함. 이 안은 국비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충남형, 사회혁신형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 조직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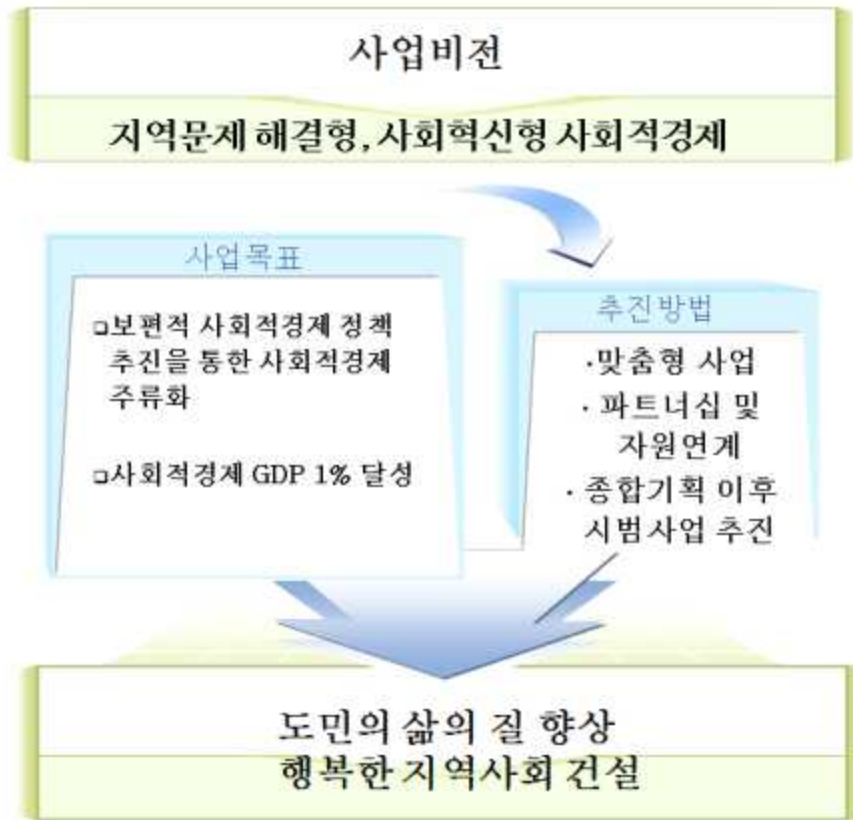


- 위탁의 주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1안 : 충남발전연구원 산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장
 - 2안 : 민간조직을 설립하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유형	1안 (충발연 센터 확장)	2안 (신설법인 위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 실무부서와 도의회를 설득하기 용이함(기존 체계의 확장) - 도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안정성 - 연구자, 활동가들의 직업 안정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율성 높음 - 민간네트워크의 확장성 높음 - 민간자조의 기틀을 놓을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을 센터로 받을 것인가의 문제 - 민간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파트너로서 조정기능의 문제 - 직업안정성 떨어질 수 있음

③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안)

1. 사업추진 전략



〈그림 5〉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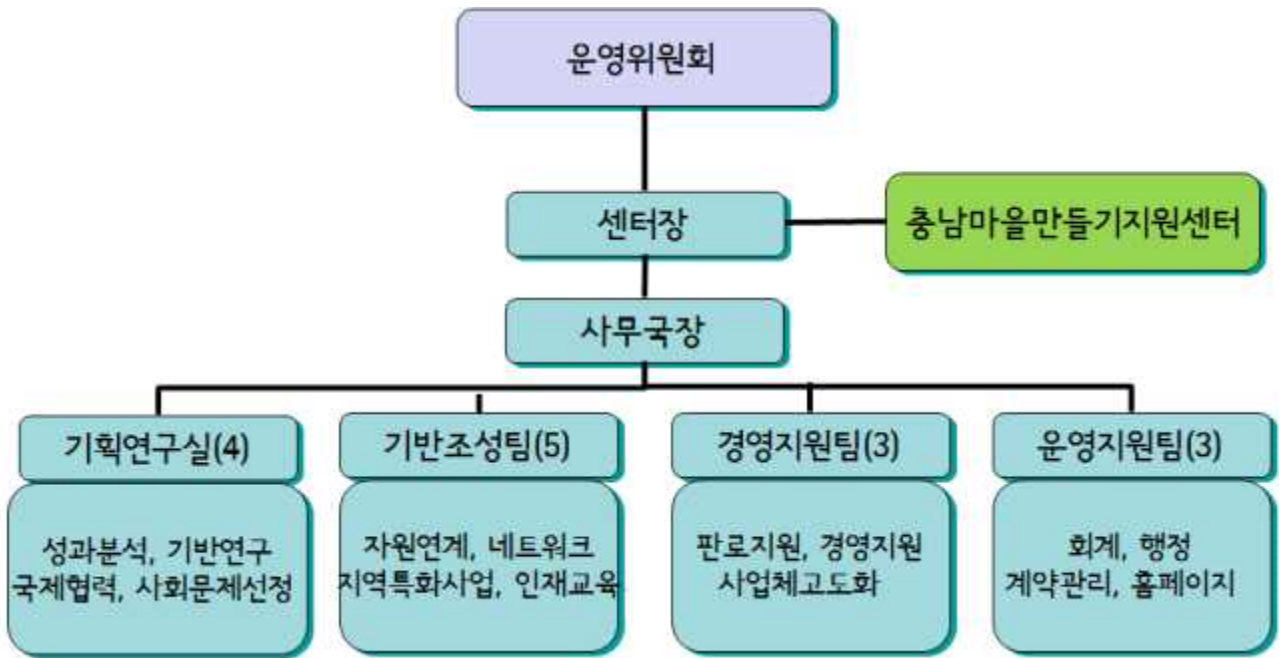
가. 추진 목표 및 비전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
- 사회적경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보편적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통한 사회적경제 주류화
- 사회적경제 GDP 1% 달성

나. 추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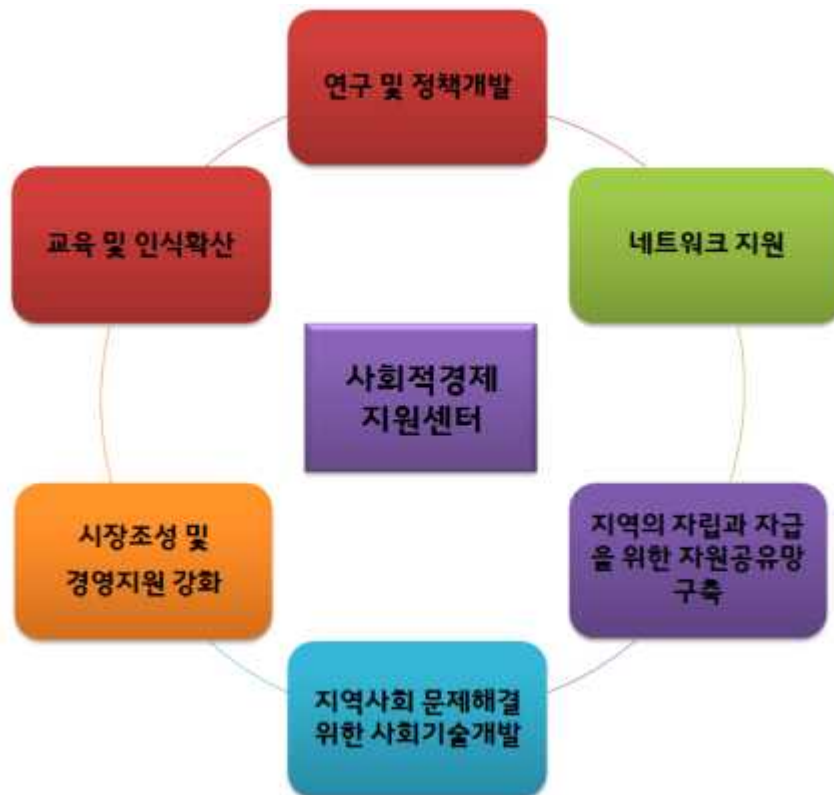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주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사업 개발, 제공
- 다양한 사회주체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자원연계 및 공동 추진
- 종합적인 기획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검증하여 확산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부설기관으로 두어 사회적경제 영역과 시너지 효과 창출

다. 추진 인력



<그림 6>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안)

2. 역할



<그림 7>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

가. 사회적경제 연구 및 정책개발

-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 사안에 따른 정책협조,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
 - 국제협력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정책 국내외 홍보

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간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경제를 확장가능하게 하는 부문별 네트워크 운영
 -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조직 연계
 -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연계
 - 충남도 산하기관 정책단위 연계
 -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한 이해관계자 확장
 - 대학과의 연계 등
- 사회적경제 부문별, 업종별 협의체 구축 및 민간단체 등과의 일상적인 협력과 의제토론이 가능하도록 센터 공간 내에 공동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을 실비로 제공
- 사회적 투자자, 윤리적 소비자들과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교류 촉진
- 천안의 공간사이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적경제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 마련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연속포럼 기획

다. 섹터 간 자원 공유망 구축

- 지역사회 내 공유지를 회복하는 프로젝트 진행
 - 공유공간 마련, 공유물품 제공 등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자원 보유체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에 사회적으로 투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영리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기업 CSV 간담회 추진
 - 이러한 간담회를 자연스럽게 충남사회공헌포럼으로 형성하고 이들의 논의를 통해 사회투자기금 공동 조성 견인, 기업의 공동구매 견인

라.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기술 개발

-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한 R&D 지원
 -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도모
 - 특히 대학과의 MOU를 통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특허기술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상용화
- 기술혁신형 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사회기술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확산

마.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 사회적경제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 과제는 ‘시장 기회의 확장’
- 수요와 공급의 전략적 매칭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공민간 시장을 적극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부문의 상호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급사슬 분석을 통해 연계 가능 품목 DB 구축
- 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거래 품목 개발, shop in shop 추진
- 따숨관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론칭시킴으로써 상품판매, 공유자원마련 등의 복합적 목표 달성

바. 맞춤형 경영전략 개발

- 기업의 성장단계별·미션별 범주화하여 욕구조사 및 지원전략 개발
- 현장맞춤형 컨설턴트 육성 및 파견
 - 충남경제진흥원 등 출연기관과의 협력, 단순 교육을 벗어나 컨설팅, 홍보, 소매 등의 직능 전문가 파견

3. 세부사업

가.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강화(기획연구실)

- 1)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및 DB구축
 - DB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사회적경제 조직 조사 모듈 개발
 - 사회적경제 이슈리포트 발간
- 2) 사회적경제 아젠다 개발을 위한 조성사업
 - 각종 포럼 등 개최(연 3회)
- 3) 매뉴얼 등 출판 업무 수행

- 4) 사회적경제 국제협력 체제 구축
 - ‘한국의 사회적경제 = 충남’ 세계적으로 확산
 - 이탈리아/퀘벡/영국/일본 등 기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망 지속·유지
- 5) 사회적경제 교재개발 및 교자재 마련
- 6) 충남도 및 지자체 지역특화사업 기획 및 추진

나. New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 실험(기획연구실)

- 1) 신재생 에너지 활용 사업
 -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
 - 소규모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중앙정부 및 연구소)
- 2) 충남형 지역화폐 시범사업
- 3)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 신탁 등 협동조합과의 기금 조성 기반 마련
- 4) 도시형 마을공동체 확장 사업
- 5) 의료생협 활성화 지원 - 예방 및 건강 안전 강화

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기반조성 1팀)

- 1) 거시정책 및 충청권 네트워크 활성화
 - 활성화네트워크 / 대전세종충북충남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활동
- 2) 업종 및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업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3) 지역 내 공유지 회복
 - 공유공간 마련, 공유물품 제공 등
- 4) 지역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지역내 기업의 CSR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연계
 - 충남도 내 출연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강화
 - 사회적 투자자, 윤리적 소비자들 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5) 건강한 거버넌스 형성
 - 공무원에게 보내는 편지 ‘ 운영 - 사회적경제 민간 조직들 요구 정기적 전달
 -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정기 진행

- 충남도 부서별 사업 융복합 추진 지원
- 6) 대학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 대학 정규 교과 강의 참여
 - 대학 사회적경제 번개 강의
 - 대학 창업동아리 확산 및 연계
 - 청년 사회적경제 캠프 운영

라. 사회적경제 교육 강화 및 인식 확산(기반조성 2팀)

- 1) 사회적경제 교육 시스템 마련
 - 사회적경제 교재 개발: 교재개발 TFT운영
 - 정규 교과 내 사회적경제 부문 확대 사업
 - 초중고 학교협동조합 설립지원
- 2)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 학습동아리 지원
 - 윤리적 소비 캠페인 진행(윤리적 소비 서포터즈 운영)
 - 사회적경제 창안대회 진행

마. 대상별 사회적경제 특성화 사업(기반조성 2팀)

- 1) 청년
 - ①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연계
 - 시범마을 선정 후 1마을 1청년 사무장 연계 사업
 - ② 청년 사회적기업가 지원 시스템 구축
- 2) 노인
 - ① 시니어 대상 일자리 시범사업
 - ② 노인의 지혜를 활용하는 프로보노 활동 지원사업
- 3) 여성
 -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일자리 모델 창출 사업

바.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강화(경영지원팀)

- 1) 지역 내 경영지원 인프라 연계 시스템 구축

-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협력 시스템 구축
 - 프로보노 등 인적자원 지속 개발
- 2) 판로 및 유통망 확장
- 사회적경제 하우스 따숨관 설치 및 운영
 -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착한소비의 확장
 - 판로 유통망 확장을 위한 민간 TFT 운영(한살림, 아이쿱, 유통조직 등 포함)
 - 사회적경제 상품 전시홍보를 위한 shop in shop 설치
- 3)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 사회적경제 리빙랩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혹은 공간사이 등 활용
 - 대학생 대상 창업프로젝트 발굴
- 4)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 우수사회적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교육
 - 프랜차이즈 기업 발굴 및 지원
- 5) 대학 및 연구소 연계를 통한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 기술혁신형 창업 아카데미 운영
 - 대학 및 연구소 특허 기술 사회적경제 영역에 상용화
 - 팹랩(Fab Lab)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시제품개발
 - 기존 적정기술 사회적경제 조직 집중 육성(모범사례 마련)

사. 운영 안정화 및 물적기반 강화 활동(운영지원팀)

- 1) 회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
- 정기적인 사회적 회계 진행을 통한 조직 목적 달성 및 내부적 민주적 운영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경영보고를 통해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 도모
- 2) 정기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업무
- 3) 사회적경제 기금 마련을 위한 TFT 구성

4. 세부사업 현황 및 예산

부서	영역	세부사업
연구기획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및 DB구축	DB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적경제 조직 조사 모듈 개발
	현장기반 연구 강화	사회적경제 이슈리포트 발간 사회적경제 아젠다 개발을 위한 조성사업
	사회적경제 국제협력 체계 구축	충남형 모델 세계 확장 사업 (워크숍, 컨퍼런스 진행) 이탈리아/퀘벡/영국/일본 등 기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망 지속·유지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 실험	신재생 에너지 활용 사업 충남형 지역화폐 시범사업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도시형 마을공동체 확장사업 의료협업 활성화 지원 학교협동조합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교육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교재개발 및 교자재 마련
	정책 협력	충남도 및 지자체 지역특화사업 추진
	기반조성 (1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건강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공무원에게 보내는 편지' 운영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정기 진행 충남도 부서별 사업 융복합 추진 지원
대학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학 정규 교과 강의 프로그램 마련 대학 사회적경제 번개 강의 대학 창업동아리 확산 및 연계 청년 사회적경제 캠프 운영

기반조성 (2팀)	사회적경제 교육시스템 마련	사회적경제 교재 개발: 교재개발 TFT운영
		정규 교과 내 사회적경제 부문 확대 사업
		초중고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대상별 사회적경제 특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 확대
		윤리적 소비 캠페인 진행/ 사회적경제 창안대회 진행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연계사업
경영지원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강화	시니어 대상 일자리 시범사업
		노인의 지혜를 활용하는 프로보노 활동 지원사업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일자리 모델 창출 사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지역 내 경영지원 인프라 연계 시스템 구축 -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협력 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하우스 따숨관 설치 및 운영
		협동조합 특성화 발전 지원
	R&D 지원	사회적경제 리빙랩 운영
		대학생 대상 창업프로젝트 발굴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운영지원	민주적 시스템 구축	대학 및 연구소 연계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존 적정기술 사회적경제 조직 집중 육성
	홍보	팹랩(Fab Lab)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시제품개발
	자립기반 마련	회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감시 및 견제
		정기소식지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립 기금 마련 TFT 운영
사업비 계		
사회적경제 허브구축을 위한 혁신파크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간 교류, 인큐베이팅, 교육, 회의 등
경상경비		출장비, 대외협력비, 국내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 교육훈련비, 센터운영비,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인건비		17명×40,000천원(평균, 퇴직금, 4대보험료 포함)
총계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별도비용)		

정관 및 운영규정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제정 2012. 1. 19.
1차 개정 2014. 10. 3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영문약자 "CSENET")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자활사업 등 (이하,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대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사원간의 협력, 지역민 참여확대, 민·관, 민·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내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공과대학 9130호에 두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
 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확산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함에 부수되거나 긴밀히 연관되는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추진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사 원

제6조 [사원의 자격과 종류] ① 사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원은 개인과 단체 가입이 가능하며 정사원과 준사원, 후원사원으로 구분한다.

③ 사원의 자격, 가입절차,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사원의 권리] ① 사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원은 법인의 시설 및 자료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사원의 의무] 이 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에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사원의 탈퇴와 제명] ① 사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사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사원의 징계]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사원으로서의 회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인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3.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징계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이사회가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정직, 견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1명 이상 3명 이하
2. 이사 : 5명 이상 (이사장포함)
3. 감사 : 2명

제12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이 법인의 사원으로 주민활동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 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공동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장을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된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또는 공석이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직 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는 당연 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임원의 성실 의무]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법령과 법인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상임이사는 상근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를 대리하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일상적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공동)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2조 [후원회장] 이 법인의 재정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원회장은 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 4 장 총 회

제23조 [지휘와 구성] ①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24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사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사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사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 담보, 증여, 대여, 매도, 기채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분사무소의 창설 및 승인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과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7조 [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사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의결제적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 [지휘와 구성] ①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 ② 이사회는 (공동)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 [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 ③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단 공동 이사장일 경우 공동 이사장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문에 불구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공동 이사장일 경우 공동이사장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예산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업무 추진을 위한 각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
 10. 각 분사무소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 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공동 이사장일 경우 공동이사장이 모두 동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 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별기구 및 사무처

제35조 [특별기구의 설치]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사무처] ① 법인의 사업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 및 특별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7조 [법인의 재산] 이 법인의 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제38조 [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원]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사업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5. 기타

제40조 [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매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주민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 [잉여금의 처분] 법인의 이 회계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

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등

제46조 [정관의 변경] 이 법안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시에는 지체 없이 법인 해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혹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귀속시킨다.

제49조 [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고지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2조 [정치중립의무] 이 법인은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53조 [인터넷 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분사무소의 규정 승인] 각 필요한 지역의 분사무소의 규정은 법인 정관에 준하여 제정하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2년 1월 19일

회원 내 규 (안)

제정 2015. 2. 27.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규약(정관 제2장 제6조 제3항)에 필요한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으로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쳤으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일부 제한되는 회원을 말한다.
3. 후원회원은 개인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는 회원을 말한다.

제3조 (회원가입 절차)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가입절차를 거친다.

1. 가입신청서 및 회원가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2. 사무처 방문 혹은 유선 상담
3. 회원 승인 및 공지

②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회원가입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과 단체의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 (회원의 회비) ① 모든 회원은 매월 1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기납, 반기납, 년납도 가능하다.

② 회원은 매월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제한한다. 단 회원이 회비미납 또는 감면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내규는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4조 회원의 회비는 2015년 2월 27일 제4차 정기총회 총회원 정수 확정에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개 정)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원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조직 운영원리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임원내규

제정 2013. 3. 28.

제1조 임원은 이사장, 감사, 이사,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설기관 또는 특별기구의 장, 회원조직 및 사업단의 책임자, 사무처의 실무책임자를 가르킨다.

제2조 임원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및 활동규범을 준수하고, 임원 영입이나 활동상의 책임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1만원 이상, 연 12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그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임원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자하면 사퇴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소속 조직의 장에게 밝히고, 해당 조직의 장은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사무처에게 통지한 이후에 사퇴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은 이사회에 결의 없이 정당의 핵심적인 직책을 갖지 아니한다. 임원이 정당의 핵심적인 직책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은 회원내규에 준한다.

취업규칙

제정 2013. 3. 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상근활동가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법협약, 그 밖에 법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하 “상근활동가”라 한다)”이라 함은 단시간 자원활동가를 제외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직 상근활동가를 의미한다.

제 2 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 (채용기회) 법인은 상근활동가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 (전형 및 채용서류) 법인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기타 법인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6조 (근로계약) ① 법인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법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상근활동가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법인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법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복 무

제8조 (복무의무) 상근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법인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활동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출근, 결근) ①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법인은 상근활동가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근활동가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①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근활동가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인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 4 장 인 사

제 1 절 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법인 대표자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상근활동가 중 법인대표자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 대표를 최소 1명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인대표자 또는 법인대표자가 위임한 자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상근활동가의 직무분석, 채용, 표창, 징계 및 고충처리 사항, 이밖에 인사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4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① 법인은 상근활동가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상근활동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법인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휴직 및 복직

제17조(휴직)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근활동가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법인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인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육아휴직) ① 법인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법인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은 상근활동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9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법인은 상근활동가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근활동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법인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⑥ 법인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복직) ① 상근활동가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근활동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인은 휴직중인 상근활동가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제 5 장 근로조건

제 1 절 근로시간

제22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단,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한다.

제24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3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상근활동가가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상근활동가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은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상근활동가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활동가에 대하여는

법인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상근활동가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활동가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법인은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7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활동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상근활동가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신부와 18세 미만인 상근활동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활동가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근활동가가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2 절 휴일·휴가

제29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상근활동가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제11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상근활동가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상근활동가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근활동가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상근활동가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상근활동가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31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상근활동가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상근활동가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법인은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상근활동가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33조(하기휴가) 상근활동가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7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경조사 휴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상근활동가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2일
3. 배우자의 출산 : 3일
4.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사망 : 5일
5.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5조(생리휴가) 법인은 여성 상근활동가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6조(병가) ① 법인은 상근활동가가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모성보호

제3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상근활동가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상근활동가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상근활동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상근활동가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활동가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활동가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활동가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활동가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법인은 상근활동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상근활동가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인은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상근활동가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38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법인은 임신한 여성 상근활동가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상근활동가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법인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상근활동가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근활동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상근활동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해당 상근활동가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법인은 상근활동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법인은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상근활동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법인과 그 상근활동가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법인은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상근활동가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상근활동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상근활동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근활동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1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상근활동가는 제18조와 제40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42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상근활동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 6 장 임 금

제43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상근활동가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44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상근활동가가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5조(비상시 지급)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상근활동가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상근활동가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상근활동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6조(휴업수당) ① 법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상근활동가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7조(상여금지급) ① 법인은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인 협약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 기준에 의한다.

② 상여금은 반기별로 5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의 재정여건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7 장 퇴직·해고 등

제48조(퇴직 및 퇴직일)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근활동가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활동가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상근활동가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법인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9조(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근활동가를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0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51조(해고의 통지) ① 법인은 상근활동가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2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3조(차별금지)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 8 장 퇴직급여

제5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법인은 1년 이상 근무한 상근활동가가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근활동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5조(중간정산) 법인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상근활동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상근활동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9 장 표창 및 징계

제56조(표창) ① 법인은 상근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법인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크게 기여한 자
3.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57조(징계)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근활동가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3조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법인에 피해를 입힌 자
3. 법인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법인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인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법인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8조(징계의 종류) 상근활동가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미미한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훈계함을 말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급여 총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상근활동가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상근활동가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61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상근활동가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제 10 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2조(직무교육) ① 법인은 상근활동가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상근활동가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63조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근활동가와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 ③ 법인은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63조(성희롱의 예방) ① 법인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상근활동가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 ② 법인의 모든 임원 및 상근활동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원과 상근활동가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④ 법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1 장 안전보건

제64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법인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② 각 부서는 법인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상근활동가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5조(안전보건 교육) 법인은 상근활동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상근활동가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6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법인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67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법인은 상근활동가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근활동가는 작업시 법인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법인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

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 제69조(건강진단) ① 법인은 상근활동가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 ②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 ③ 상근활동가는 법인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 제7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법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상근활동가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 ② 상근활동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 장 재해보상

- 제71조(재해보상) ① 상근활동가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 보상한다.

제 13 장 취업규칙

제72조(취업규칙의 비치)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상근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3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상근활동가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3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회원투표 및 임원선출 내규

제정 2013. 3.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민주적인 운영과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회원투표라 함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제3조 (회원투표 종류) 회원투표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의결투표로 구분한다.

제4조 (회원투표 방법) 회원은 회원투표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투표소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투표방법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회원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방식을 정해야 한다.

제2장 의결투표

제5조 (의결투표 발의) 의결투표의 발의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이사장이 발의한다.

제6조 (의결투표 관리) 의결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회원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은 의안에 대해 찬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무처는 필요한 실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투표 공고) 의결투표는 투표일 20일 전에 법인의 소식지, 홈페이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의안과 투표 절차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명부 작성) 의결투표가 공고되면 사무처는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투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회원이 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재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투표 운동) 회원은 허위사실 유포, 인신 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회원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 게시판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종족수) 의결투표는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참여와 투표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의 효력) 회원투표를 통한 의결사항은 우리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한 회기에 같은 사안에 대한 회원투표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제3장 선거투표

제12조(이사장, 이사, 감사의 정수) 이사회는 임원이 임기 만료 50일전에 이사진과 감사의 정수를 정하고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의 자격) 회원은 정관과 회원내규, 임원내규 등 우리 법인이 정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한 회원은 이사와 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입후보의 등록) 이사와 감사가 되고자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1. 사진이 첨부된 생년월일과 주요경력 등이 포함된 자기 소개서
2. 우리 법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3. 위원회 또는 사업단 등 회원조직의 추천 의결서 또는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서

제15조(후보자자격심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1. 이사와 감사 후보의 자격 심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2. 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후보 등록서류의 신뢰성, 회원내규 및 임원내규 등 우리 법인의 제반규정 준수 의지와 능력 소지 여부, 기타 우리 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항 여부 등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심사에서 부적격 심사의견을 받은 사람에 대해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4.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당선자의 결정)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투표방법 등은 의결투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사 등의 선임)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이사, 감사, 사무처장 등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는 회원내규와 임원내규를 준수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이사장과 감사 등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선거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처장은 반드시 상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의견조사

제20조(회원의견조사) 이사회는 우리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회원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전화ARS 또는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회원의견조사의 효력) 이사회는 회원의견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내규는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성희롱 방지 내규

제정 2013. 3. 28.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각종 활동과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과 대책을 전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성희롱의 정의) 단체내 성희롱이라 함은 우리 법인 회원 간에 단체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과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활동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희롱 고충처리의 원칙)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며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성희롱 고충처리) 활동 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회원의 고충 접수와 처리를 위해 여성 임원을 성평등노동위원으로 지정하며, 임원과 상근활동가는 성희롱에 대한 고충이 발생한 것을 아는 즉시 성평등노동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성평등노동위원은 고충 접수 즉시 사무처장에 보고하고, 사무처장은 이사장 등과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하여야한다.

제5조 (성희롱 예방지침) 임원과 상근활동가는 아래와 같은 성희롱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회원들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2. 회원간 존칭을 사용한다.
3. 성희롱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5. 회식 때 술과 유흥을 강요하지 않는다.
6. 공식적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7.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9.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10. 양성평등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성희롱 예방교육) 사무처장은 년 1회 상근활동가 전원이 참여하는 성희롱 방지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 내규 및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한 예시를 임원과 회원이 숙지하도록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성희롱 제보 불이익 금지) 성평등노동위원이나 사무처장, 이사장 등 임원은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8조 (성희롱으로 보는 행위 예시)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는 다음과 예시와 같다.

1. 눈으로 하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 옷은 입을 채로 자신의 성기 등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말로 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3. 몸으로 하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4.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내규는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2014년 활동일지

CMS 회원가입 신청서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돈 보다는 '사람' 중심의 경제공동체... 경쟁 보다는 '협동' 중심의 지역공동체...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됩니다.
이 메 일	
휴 대 전 화	
우편물 수령주소	
은행_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출금 희망일자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매월 _____ 일)
후 원 금 액	<input type="checkbox"/> 월 5,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1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2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3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5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매년 _____ 원)
회원활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 회원 ※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운동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후원회원 ※ 사람과 사회를 잇는 아름다운 사회적경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계좌번호	회원가입 및 CMS자동이체를 통한 회비납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일정기간동안 보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CMS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수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041-415-2012, 회원관리담당)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사람과 사회를 잇는 아름다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위와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